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64호 2018. 12. 12.(수)

공 고

-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
-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03
- 목포시 교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130

회람							
----	--	--	--	--	--	--	--

목포시 공고 제2018-1557호

입 법 예 고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민선7기 ‘평화경제의 중심, 위대한 목포시대’를 위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한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개편된 부서장의 직급과 부서별 분장 사무를 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 단위 개편

구 분	개 편 내 용	비고
명칭변경	○ 기획관리국 → 기획문화국 ○ 관광경제수산물국 → 관광경제국 ○ 교육문화사업단 → 환경관리사업단	

나. ‘과’ 단위 개편

구 분	개 편 내 용	비고
신 설	○ 지역경제과	
폐 지	○ 상하수도행정과	
명칭변경	○ 성장동력실 → 기업유치실 ○ 일자리정책과 → 청년정책과 ○ 농업산업과 → 농업정책과 ○ 환경시설관리사무소 → 환경시설관리과 ○ 남해환경관리과 → 남해수질관리과 ○ 북항환경관리과 → 북항수질관리과 ○ 도시개발과 → 도시문화재과 ○ 문예시설관리과 → 문예시설관리사무소 ○ 체육시설관리과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구 분	개 편 내 용	비고
소속변경	○ 기획관리국 기획예산과 공보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 기획문화국 ○ 기획관리국 일자리청년정책과 ⇒ 관광경제국 ○ 교육문화사업단 문화예술과 ⇒ 기획문화국 ○ 교육문화사업단 교육체육과 ⇒ 자치행정복지국 ○ 관광경제수산국 관광과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농업정책과 ⇒ 관광경제국 ○ 관광경제수산국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 환경관리사업단 ○ 교육문화사업단 문예시설관리과 체육시설관리과 목포자연사박물관 ⇒ 사업소 ○ 환경시설관리사무소 ⇒ 환경관리사업단	
순위변경	○ 기획문화국 당초) 기획예산과, 공보과, 세정과, 일자리정책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변경) 기획예산과, 문화예술과, 공보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 자치행정복지국 당초)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 변경) 자치행정과, 교육체육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 ○ 관광경제국 당초) 관광과,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농업산업과,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변경) 관광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정책과,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농업정책과 ○ 환경관리사업단 당초) 교육체육과, 문화예술과, 문예시설관리과, 체육시설관리과, 목포자연사박물관 변경)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환경시설관리과	

다. '담당' 단위 개편

구 분	개 편 내 용	비고
신 설 (10)	○ 기획예산과 납세자보호 ○ 교육체육과 체전지원 ○ 관광과 미디어마케팅 ○ 지역경제과 신산업 ○ 일자리청년정책과 일자리사업 ○ 의회사무국 정책 ○ 하당보건지소 치매보건 ○ 자원순환과 폐자원시설 ○ 도시문화재과 역사공간조성 ○ 공원녹지과 화훼	
통폐합 (8)	○ 기업유치실 산단분양+신산업유치 ⇒ 산단분양 ○ 기획예산과 기획+인구정책 ⇒ 기획 ○ 기획예산과 법무+규제개혁 ⇒ 법무혁신 ○ 기획예산과 의료원총무과장 ⇒ 폐지 ○ 교육체육과 체육지원+스포츠마케팅 ⇒ 체육지원 ○ 관광과 관광마케팅+관광투자유치 ⇒ 관광마케팅 ○ 농업산업과 유통+급식지원 ⇒ 농업유통 ○ 안전총괄과 안전기획+안전관리 ⇒ 안전관리	

구 분	개 편 내 용	비고
명 칭 변 경 (18)	- 문화예술과 문화지원 ⇒ 문화정책 - 문화예술과 공연기획 ⇒ 문화시설관리 - 자치행정과 공무원단체 ⇒ 후생복지 - 자치행정과 지역공동체 ⇒ 소통공동체 - 해양항만과 연안관리 ⇒ 도서관리 - 수산진흥과 수산물브랜드 ⇒ 수산가공유통 - 수산진흥과 해양수산업복합벨트 ⇒ 수산산업 - 건강증진과 질병감염병관리 ⇒ 감염병관리 - 자원순환과 폐기물 ⇒ 폐자원관리 - 하수과 하수 ⇒ 하수시설 - 남해수질관리과 신도심환경 ⇒ 남해수질관리 -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지원 ⇒ 재생전략 - 도시재생과 재개발 ⇒ 주거지재생 - 도시재생과 재건축 ⇒ 재생시설 - 도시문화재과 문화시설 ⇒ 문화재시설 - 도시문화재과 관리 ⇒ 공영개발 - 도시문화재과 택지개발 ⇒ 도심개발 - 공원녹지와 녹지화회 ⇒ 녹지	
소 속 변 경 (98)	- 성장동력실 2담당 ⇒ 기업유치실 - 기획예산과 5담당 ⇒ 기획문화국 - 문화예술과 4담당 ⇒ 기획문화국 - 문화예술과 문화유산 ⇒ 도시문화재과 - 문화예술과 문화시설 ⇒ 도시문화재과 - 공보과 2담당 ⇒ 기획문화국 - 일자리정책과 3담당 ⇒ 일자리청년정책과 -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담당 ⇒ 지역경제과 - 일자리정책과 산업지원담당 ⇒ 지역경제과 - 일자리정책과 국제통상담당 ⇒ 지역경제과 - 일자리정책과 에너지관리담당 ⇒ 지역경제과 - 세정과 9담당 ⇒ 기획문화국 - 회계과 4담당 ⇒ 기획문화국 - 정보통신과 4담당 ⇒ 기획문화국 - 교육체육과 5담당 ⇒ 자치행정복지국 - 관광과 6담당 ⇒ 관광경제국 - 해양항만과 4담당 ⇒ 관광경제국 - 수산진흥과 5담당 ⇒ 관광경제국 - 농업정책과 4담당 ⇒ 관광경제국 - 환경보호과 4담당 ⇒ 환경관리사업단 - 자원순환과 4담당 ⇒ 환경관리사업단 - 문예시설관리과 5담당 ⇒ 사업소 - 체육시설관리과 2담당 ⇒ 사업소 - 목포자연사박물관 4담당 ⇒ 사업소 - 상하수도행정과 수도행정담당 ⇒ 수도과 - 상하수도행정과 하수행정담당 ⇒ 하수과 - 상하수도행정과 요금담당 ⇒ 수도과 - 남해환경관리과 4담당 ⇒ 남해수질관리과 - 북항환경관리과 3담당 ⇒ 북항수질관리과 - 도시개발과 산단조성담당 ⇒ 기업유치실 - 도시개발과 2담당 ⇒ 도시문화재과 - 환경시설관리사무소 3담당 ⇒ 환경관리사업단	

라. 단위별 업무이관

부 서 명	업 무 명	인수부서
기 업 유 치 실	○ 에너지밸리 관련 업무 추진	지 역 경 제 과
기 획 예 산 과	○ 목포시 의료원 재정지원 및 예산·결산·관리 업무 지도·감독	보 건 위 생 과
문 화 예 술 과	○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 유형문화재 보존관리 ○ 무형문화재 보전전승 관리 ○ 무형문화재 지정신청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위탁관리 ○ 매장문화재 발굴계획 ○ 문화재 매매업소 지도감독 ○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계획 ○ 국가문화재 현상변경 승인 ○ 목포근대역사관(동척) 운영·관리 ○ 목포 만호진 역사공원화 조성사업 종합계획 ○ 목포시 문화유산위원회 운영 ○ 목포시사 편찬에 관한 사항 ○ 기타 일반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항 ○ 황해교류역사관 업무 전반	도시문화재과
세 정 과	○ 납세자 관리현장에 관한 사항 ○ 세무 고충민원 처리 및 상담에 관한 사항	기 획 예 산 과
일 자 리 청 년 과	○ 경제정책 종합 기획·조정 협의 ○ 지역경제발전 기본계획 수립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교육 ○ 지역경제 동향파악 관리 ○ 경기분석 및 지표작성 관리 ○ 경제자료 작성 및 관리 ○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경제정책 협의 ○ 지식기반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시행 ○ 테크노파크 조성 운영 ○ 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기구 설치 운영 ○ 나노산업 육성 및 관련기업 지원 ○ 신소재·나노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 신소재산업화지원센터 설치 운영 ○ 산업디자인 개발사업 ○ 생물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 생물산업 기술개발 및 기술인력 육성 지원 사업 추진 ○ 생물산업 분야 산·학·연 기술협력사업 추진 ○ 생물지원연구센터 설립 등 생물산업 관련 기반조성 업무 ○ 바이오산업 발굴 및 육성 ○ 첨단과학연구단지의 조성지원 사업 ○ 과학기술진흥 및 연구개발 업무의 종합 기획 조정 ○ 과학기술정보교류·홍보 및 학술활동 지원 ○ 과학기술 사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 대학내 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련 시설(연구소 및 센터)운영 지원 ○ 지역특성화 기술개발 사업	지 역 경 제 과

부 서 명	업 무 명	인수부서
일 자 리 청 년 정 책 과	○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자문관 활용 사업 지원 ○ 기업체 기술지도 종합기획 조정 ○ 지역기술 혁신센터(TIC) 지원 ○ 정보벤처산업 육성 전략 수립 ○ 정보벤처관련 기획조정 및 통제 ○ 정보벤처산업 육성 및 지원체제 정비 ○ 정보벤처기업 활성화 대책 협의 ○ 정보벤처산업 관련 주요 시책개발 및 국비 확보 ○ 벤처 정보마인드 확산을 위한 시민교육 ○ 벤처지원센터 운영 ○ 그 밖에 정보벤처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 지역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추진 ○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운영 관리 ○ 문화산업지원센터 운영 관리 ○ 문화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 ○ 상공회의소 지원 업무 ○ 국가산업단지 및 입주업체 지원 ○ 국가산단 투자환경개선 추진 ○ 지방산업단지 관리업무 지원 ○ 삽진산업단지 분양 및 지도 . 감독 ○ 산정농공단지 분양 및 지도 . 감독 ○ 농공 및 산업단지 시설물 관리 및 유지 관리, 입주계약(변경) ○ 농공 및 산업단지 공장설립 완료 신고 ○ 농공 및 산업단지 임대신고 및 분양 신고 ○ 산업자원동원 총무계획수립 시행 ○ 대불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지원 ○ 보세지역 지정에 관한 업무 ○ 지역 연구센터(RIC) 사업 육성 ○ 노동조합 설립신고 변경 . 해산 신고 ○ 노동조합 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 노동조합 규약 및 결의처분 시정명령 ○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 및 공고 ○ 노동조합 과태료 부과 . 징수 ○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신고수리, 중지명령 ○ 노동조합 단체협약체결 신고수리 및 시정명령 ○ 노동조합 노동관계의 지원 ○ 직장폐쇄의 신고 . 수리 ○ 광업권(조광권) 관리 ○ 광산 보안 및 재해대책 ○ 목포시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 및 운영 ○ 유망 중소기업 육성 . 지도 ○ 다른 기관 중소기업 자금 지원 ○ 중소기업제품 홍보 . 판매 . 참가 지원 ○ 지방중소기업 육성 종합기획 조정 ○ 기업애로사항 지도 및 해결 .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 ○ 제조업체 현황조사 및 관리 ○ 공장등록증 민원 발급 ○ 공장설립 등록 및 사후관리(폐업, 변경 등) ○ 공장의 소유자에 대한 보고 . 검사 등 ○ 시 경계 부근 공업단지 조성 ○ 조선 관련 산업 지원 및 육성 ○ 노동자 참여 세미나, 선진지 견학, 교육 등 지원 및 운영 ○ 외국인 근로자 관련 각종 상담 등 외국인 콜센터 운영	지 역 경 제 과

부 서 명	업 무 명	인수부서
일 자 리 청 년 정 책 과	○ 산 . 학 . 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추진 ○ 창업사업계획 승인 협의 ○ 창업예비학교 운영 ○ 창업보육센터 설치운영 ○ 국제통상진흥시책 개발연구 및 종합기획 조정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지원 업무 ○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 수출진흥 계획 수립 추진(공산품, 가공식품, 농수산물) ○ 수출업체 육성 . 지원 및 유망수출제품의 해외 홍보 ○ 수출입 계획 . 실적 총괄 ○ 수출입 정보 및 자료 관리 ○ 수출종합상담실 운영 ○ 바이어 초청 . 안내 . 지원 ○ 국제교류 협력증진 시책 연구 ○ 국제자치단체간 자매결연 및 친선 우호협력 업무 ○ 외국 민간단체와의 교류협력 업무 ○ 외국 자치단체간 교류 인사영접 및 안내 ○ 외국어 통역 . 번역 지원 ○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방안 연구 ○ 국제 카페리선 취항지원 업무 ○ 산업통상자원부소관 업무 중 다른 실과에 분장되지 아니한 사항 ○ 지방해양수산청(항만관련부서 소관 제외) 업무 협의 ○ 공예품 개발 및 지원 ○ 투자유치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 시행 . 조정 ○ 투자유치 지원제도 . 시책 및 인센티브 개발 ○ 투자 유치 및 투자자에 대한 정보관리 . 자료제공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투자유치기업 재정지원제도 운영 ○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운영 ○ 투자유치자문관 운영 . 지원 ○ 국내 잠재투자가 발굴 및 DB구축 ○ 출항기업 등 국내기업 정보 수집 및 관리 ○ 투자유치 프로젝트개발 및 타당성 분석 ○ 투자유치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 잠재투자가 초청 투자설명회 개최 ○ 유치기업 행정지원 및 고충사항 처리 ○ 투자유치 원스톱(ONE-STOP)서비스 지원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 국내 . 외 기업 투자유치 추진 ○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관련업무 총괄 ○ 민간 투자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업무 ○ 민간기업 외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 외자유치 업무 ○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관 운영 . 지원 ○ 외국인 투자가 정보수집 및 관리 ○ 외국인 투자기업 고충 처리반 운영 ○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업무 ○ 외국인 투자기업 사후관리 ○ 외국인 투자지원(FOLLOW-UP) 관리에 관한 사항 ○ 해외투자유치 전략 및 세부실행계획 수립 ○ 해외투자 시장 분석 ○ 해외투자자 초청 상담 ○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해외박람회 참가 ○ 해외투자 발굴 및 투자유치단 파견	지 역 경 제 과

부 서 명	업 무 명	인수부서
일 자 리 청 년 정 책 과	○ 외자투자·유치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 ○ 투자유치 전반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 입주계약 심사 및 체결 ○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추진 ○ 연료수급의 종합계획 수립 ○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 관리 ○ 전기설비 사후관리 ○ 전기용품 제조업 등록 및 사후관리 ○ 불법·불량 전기용품 단속 ○ 전기안전관리 대행업 등록 및 사후관리 ○ 발전사업 허가 및 수급계약 인가 ○ 유류수급 조정 ○ 석유류판매업 등록 및 지도·감독 ○ 석유류 품질관리 ○ 석탄 및 연탄수급 조정 ○ 석탄가공업 허가 및 지도·감독 ○ 연탄품질 관리 ○ 에너지관리 소비절약 추진 ○ 에너지관리 지정업체 지도·감독 ○ 열사용 기자재 제조업체 지도·감독 ○ 열관리 시공협회 위탁업무 지도·감독 ○ 가스안전관리 계획 수립 ○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판매, 저장, 제조업, 충전)업소 지도 감독 ○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판매, 저장, 제조업, 충전) 허가 및 변경 허가 ○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및 지도·감독 ○ 도시가스시설 공사계획 승인 및 신고 ○ 특정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 및 사용시설 사후 관리 ○ 가스시설 시공자 지도·감독 ○ 도시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 지도·감독 ○ 녹색에너지연구원 설립·운영·지도·감독	지 역 경 제 과
농 업 정 책 과	○ 대규모 점포 등록·지도관리 ○ 전남서남부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운영 지도·감독 ○ 담배소매인의 지정 및 지도·감독 ○ 담배도매업 등록, 휴·폐업 신고 접수 ○ 담배도매업의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 전자상거래 업무 추진 ○ 상거래질서 확립(가격표시제) ○ 미터법 통일 지도 ○ 계량기 수리검정, 검사 및 부정계량기 단속 ○ 계량기 수리업소 지도·감독 ○ 물가종합대책 수립 및 조정 총괄 ○ 물가동향의 종합분석 및 조정 ○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 공공요금, 관인요금의 관리 ○ 소비자 고발처리 및 보호대책 수립 ○ 새마을금고의 합병 또는 분할의 승인 ○ 지역경제분야 금융지원 업무 및 금융통화 자료 관리 ○ 「복권 및 복권기금법」위반행위 지도단속 계획 ○ 「복권 및 복권기금법」위반행위 과태료 부과·징수 ○ 「복권 및 복권기금법」홍보 및 계도 ○ 복권위원회 업무협조·지원 ○ 대부업 등록·변경·폐업신고 및 지도·감독 ○ 대부업 영업정지·등록 취소	지 역 경 제 과

부 서 명	업 무 명	인수부서
농업정책과	○ 대부업자 등록수수료 징수 ○ 대부업자 과태료 부과·징수 ○ 상표관리(부정경쟁 방지업무) ○ 방문·통신판매업 등 신고 수리 및 지도·감독 ○ 품질표시 상품단속 ○ 공산품 품질조사 및 품질경영 추진 ○ 불량 공산품 단속 ○ 불량 공산품 신고센터 운영 ○ 으뜸장인상 제도 운영 ○ 상정, 소상공인 업무	지역경제과
자원순환과	○ 친환경상품 구매에 관한 사항	환경보호과
도시재생과	○ 원도심 개발관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계획 수립 및 유치활동에 관한 사항 ○ 원도심 개발관련 국책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원도심 활성화 종합대책 추진 ○ 원도심지역 특화의 거리 조성 ○ 원도심 도시계획사업 관련 보상업무 추진 ○ 원도심 입점업체 임대료 지원 ○ 원도심 특화거리 내 건물수선비 지원 ○ 원도심 상가 활성화 현안사업 추진 ○ 원도심 내 도심상가 주차장 조성 ○ 원도심권 기반시설 조성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현안사업 추진 ○ 주거환경 개선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 소방도로 개설 등 각종 사업 추진 ○ 삼학도복원화 사업 ○ 삼학도 해양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추진 ○ 원도심 재개발 종합계획 수립 시행 ○ 원도심 재개발 관련 민간자본 유치계획 수립 및 유치활동에 관한사항 ○ 원도심 재개발 및 뉴타운조성, 도시계획사업 관련 보상업무 추진 ○ 구) 중앙공설시장 재건축 등에 관한 사항 ○ 구) 가톨릭병원 성지조성 사업 ○ 구) 가톨릭병원 성지조성 사업관련 기반시설 사업 추진 ○ 서남권 수산물유통센터 재건축(광동상가) 및 진입도로 확장 공사 ○ 대성지구 공공주택개발 사업 ○ 서산·온금지구 재개발사업 사업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서산·온금지구 재개발사업 관련 기반시설사업 추진 ○ 도심관통도로(7호광장 ~ 구)중앙공설시장간) 개설 ○ 청호대교 건설에 관한 사항	도시문화재과
도시문화재과	○ 산업단지 조성(공사부분) 및 대지조성사업 ○ 산단 기업유치 기반시설 지원(토지 분할 등)	기업유치실

마. 업무신설

부 서 명	업 무 명	비 고
기 업 유 치 실	○ 산업단지 실시계획 인허가 업무 ○ 대양산단 금융약정 관련 사항 ○ 대양산단 청산관련 사항 ○ 대양산단 미분양용지 취득 및 처분업무	산 단 조 성 담 당
기 획 예 산 과	○ 정부혁신 대응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정부혁신 추진과제 발굴 및 관리 ○ 정부혁신 추진체계 구축·운영 ○ 정부혁신 교육·홍보 및 성과관리	법 무 혁 신 담 당
자 치 행 정 과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소 통 공 동 체 담 당
교 육 체 육 과	○ 전국체전·장애인체전 기본계획 수립 ○ 전국체전·장애인체전 운영위원회 구성 ○ 전국체전·장애인체전 개·폐회식 운영 지원 ○ 전국체전·장애인체전 개최 홍보 ○ 전국체전·장애인체전 문화예술행사 추진 ○ 목포종합운동장 건립 ○ 그 밖에 전국체전·장애인체전에 관한 사항	체 전 지 원 담 당
관 광 과	○ 현안사업 분야별 브랜드 마케팅 홍보 업무 추진 ○ 목포브랜드 개발관리 및 홍보 ○ 영상홍보 매체별 동향 관리 및 조치(선제적 대응)	미 디 어 마 케 팅 담 당
지 역 경 제 과	○ 신산업 동향 파악 및 신산업 발굴 육성 ○ 미래전략산업 업무 종합 기획·조정 ○ 4차 산업혁명 대응 업무 조정·지원 ○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시책 발굴 지원 ○ 4차 산업혁명 관련 동향 및 정보 파악·전파 ○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및 공약사업 추진 ○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추진 ○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추진 ○ 신재생에너지 공동 특화사업 발굴 추진	신 산 업 담 당

부 서 명	업 무 명	비 고
일 자 리 청 년 정 책 과	○ 일자리사업 종합관리 ○ 일자리사업 발굴 ○ 일자리브랜드사업 발굴	일자리사업담당
	○ 청년취업 및 창업·창직 지원 ○ 청년일자리 신규시책 발굴 및 사업화 추진 ○ 청년취업아카데미 및 취업컨설팅 지원	청년정책담당
도 시 계 획 과	○ 스마트시티 관련 업무	도시계획담당
하당보건지소	○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치매보건담당
수 도 과	○ 상수도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 상수도사업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 ○ 상수도사업회계 현금출납 및 금고감독 ○ 상수도사업회계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 보관 ○ 상수도사업회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지방채관리 ○ 상수도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 구매, 기타의 계약 ○ 상수도사업 회계 결산, 경영평가 관리 ○ 상수도사업 회계 공인관수 및 문서 관리 ○ 상수도 공기업회계 행정재산 유지관리 ○ 상수도사업 시설용지 취득 및 처분과 용지보상 ○ 상수도재산 임대료 부과 및 징수 ○ 상수도사업 회계 자재수불 및 보관 유지 관리 ○ 상수도사업용 차량관리 ○ 상수도사업 회계 은닉재산 색출 및 소유권확보 ○ 상수도사업 회계 세입금 관리 ○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 상수도 사용료 이의신청 처리 ○ 상수도요금 인상 및 조정 관리 ○ 시외급수의 검침과 사용료 과징 ○ 부정수도 사용자 및 시설 신고(수도계량기 검침원) ○ 급수공사 시공명령 ○ 급수전 명의변경 ○ 수도계량기 시험의뢰 신청 접수 ○ 다량 수도사용수용가 관리 ○ 물이용 부담금에 관한 사항 ○ 재산의 대부,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 재산의 시가조사 및 가격 평가에 관한 사항	수도행정담당 요금담당

부 서 명	업 무 명	비 고
하 수 과	○ 하수도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 하수도사업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 ○ 하수도사업회계 현금출납 및 금고감독 ○ 하수도사업회계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 보관 ○ 하수도사업회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지방채관리 ○ 하수도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 구매, 기타의 계약 ○ 하수도사업 회계 결산, 경영평가 관리 ○ 하수도사업 회계 공인관수 및 문서 관리 ○ 하수도 공기업회계 행정재산 유지관리 ○ 하수도사업 시설용지 취득 및 처분과 용지보상 ○ 하수도재산 임대료 부과 및 징수 ○ 하수도사업 회계 자재수불 및 보관 유지 관리 ○ 하수도사업용 차량관리 ○ 하수도사업 회계 은닉재산 색출 및 소유권확보 ○ 하수도사업 회계 세입금 관리 ○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 하수도 사용료 이의신청 처리 ○ 하수도요금 인상 및 조정 관리 ○ 재산의 대부,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 재산의 시가조사 및 가격 평가에 관한 사항 ○ 하천, 하수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점·사용료 부과 징수 ○ 하수도 배출량 조사 ○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하 수 행 정 담 당
도 시 재 생 과	○ 지역밀착형 생활SOC 관련 업무	재 생 전 략 담 당
도시문화재과	○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 문화재청 문화재관련사업	근대역사공간담당

바. 실·과·소·동장 직렬조정

부 서	직 급	직 렬	비 고
지 역 경 제 과 장	5급	행정·시설	전)상하수도행정과장

사.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3조(동장의 직급)

[별표1] 동장의 직급 기관별란의

‘연산동 주민센터’, ‘대성동 주민센터’, ‘삼학동 주민센터’, ‘만호동주민센터’, ‘이로동 주민센터’, ‘삼향동 주민센터’, ‘옥암동 주민센터’를

각각 ‘연산동 행정복지센터’, ‘대성동 행정복지센터’, ‘삼학동 행정복지센터’, ‘만호동 행정복지센터’, ‘이로동 행정복지센터’, ‘삼향동행정복지센터’, ‘옥암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3. 개정 규칙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6.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
-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

7. 규제심사(심의) 대상 여부검토 : 해당없음

8.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개선사항없음

- 여성가족과-44222(2018.12.11.) : 2018A전남목포064

9. 입법예고 : 2018. 12. 12. ~ 12. 15.(3일간)

-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적은 행정조직 내부 사무분장사항이며, 민선 7기 조직개편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한 규칙 개정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축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목포시 자치법규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정』 제10조

-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서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10. 사전협의(승인)사항 : 해당없음

11.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우530-701,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자치행정과)]

12.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061-270-3439, FAX 270-87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규칙 제 호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감사실장 · 성장동력실장**”을 “**감사실장 · 기업유치실장**”으로 한다.

제3조의2의 제목 “(**성장동력실**)”을 “(**기업유치실**)”로 하고, 제3조의2제1항과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장동력실장**”을 “**기업유치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9호부터 제30호까지를 삭제하고, 제31호부터 제3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삭제

30. 삭제

31. 산업단지 조성(공사부분) 및 대지조성사업

32. 산업단지 기업유치 기반시설 지원(토지 분할 등)

33. 산업단지 실시계획 인허가 업무

34. 대양산단 금융약정 관련 사항

35. 대양산단 청산관련 사항

36. 대양산단 미분양용지 취득 및 처분업무

제2절의 제목과 제4조의 제목 “**기획관리국**”을 “**기획문화국**”으로 한다.

제4조 중 “**기획예산과장 · 공보과장 · 세정과장 · 일자리정책과장·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전산사무관 또는 지방통신사무관으로**”를 “**기획예산과장 · 문화예술과장·공보과장 · 세정과장 ·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통신사무관으로**” 한다.

제5조에 제43호를 삭제하고, 제100호부터 제10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3. 삭제

100. 정부혁신 대응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101. 정부혁신 추진과제 발굴 및 관리

102. 정부혁신 추진체계 구축·운영

103. 정부혁신 교육·홍보 및 성과관리

104. 세무조사·채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105.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106.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사항

제5조의 2(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2. 문화·예술행사 운영(시립예술단체 행사 제외)
3.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지도 육성
4. 문예진흥기금 운영·관리
5.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6.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7.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8. 예술촌 조성 및 운영
9. 평화광장 야외무대 유지 관리
10. 문화의 집 조성 및 운영·관리
11. 목포문화재단 운영
12. 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13. 작은 어린이도서관 운영 관리
14.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관리
15. 건축물 미술장식품 설치·심의
16. 야외놀이마당 유지관리
17. 출판사 및 인쇄소 신고, 변경신고 및 관리
18. 공연장 등록·변경·폐업처리·승계사항 처리
19. 공연장 지도·감독
20. 영화상영 신고 수리
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22.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23. 목포를 빛낸 명인선정 및 조형물 설치
24.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25. 거주외국인 각종 문화예술행사 초청 및 참여
26. 거주외국인 지역유적지 답사, 문화체험, 각국 기념일 행사 지원
27. 노적봉 예술공원 운영·관리
28. 전시작품 구입 및 수집에 관한 사항
29. 공연작품 기획, 제작, 공연에 관한 사항
30.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유치, 조성
31. 유달예술타운 운영·관리
32. 그 밖에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제7조에 제30호부터 제31호까지를 삭제한다.

30. 삭제

31. 삭제

제7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 중 “자치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사회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을 “자치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육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사회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으로 한다.

제11조제1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4.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제12조(교육체육과) 교육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중·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분야 지원 및 시책발굴에 관한 사항
2. 초·중·고 우수학생 표창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초·중·고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4.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교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목포장학재단 지도감독 및 인재육성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7.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평생학습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사항
9. 평생교육 발전계획 수립 및 학습 진흥에 관한 사항
10.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11.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2.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14. 평생학습 정보 제공 및 학습 상담에 관한 사항
15. 평생학습 축제 개최에 관한 사항
16. 평생학습 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7. 평생교육 강사풀제 운영에 관한 사항
18.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9. 목포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20. 목포시 평생학습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1. 평생교육 기관, 동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운영·지원
22. 동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3. 동 주민사랑방 강사, 자원봉사 요원 지원
24. 동 주민사랑방 물품관리 일반사항
25. 동 주민사랑방 운영실적 평가 분석
26. 동 주민사랑방 운영비 등 경상예산 지원
27. 동 주민사랑방 거주외국인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8.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9. 서남권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
30. 성인 문해 교육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1.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32. 거주외국인에 대한 사회적응(한글 및 한국어) 교육 지원
33. 체육진흥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34. 재단법인 체육진흥회업무에 관한 사항
35.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36.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및 지도·육성
37. 생활체육 동호인 지도·육성
38. 각종 생활체육 동호인대회 지원 및 운영·관리
39. 체육회 관련 업무지도
40. 각종 체육행사주관 및 지도·관리
41.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 시설 설치
4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상 체육시설업의 등록신고 등 지도·감독
43. 체육회소속 경기단체 주관 자전거대회 지원 업무
44. 직장체육활동의 지원
45. 직장 체육팀의 지도·육성
46. 직장운동부 운영관리 (하키팀, 육상팀, 축구팀)
47.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48.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49. 스포츠 이벤트 개최
50. 스포츠 마케팅 및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51. 스포츠관광 홈페이지 구축
52. 스포츠관광 프로그램 발굴
53. 청소년 스포츠클럽 지도·감독
54. 목포축구센터 지도·감독
55. 거주외국인 각종 체육행사 초청 및 참여 지원
56. 기타 체육업무에 관한 사항

- 57. 전국체전·장애인체전 기본계획 수립
- 58. 전국체전·장애인체전 운영위원회 구성
- 59. 전국체전·장애인체전 개·폐회식 운영 지원
- 60. 전국체전·장애인체전 개최 홍보
- 61. 전국체전·장애인체전 문화예술행사 추진
- 62. 목포종합운동장 건립
- 63. 그 밖에 전국체전·장애인체전에 관한 사항

제16조에 제79호, 제81호부터 제83호, 제85호, 제101호, 제103호, 제106호부터 제108호까지를 삭제하고, 제109호부터 제12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9. 삭제
- 81. ~ 83. 삭제
- 85. 삭제
- 101. 삭제
- 103. 삭제
- 106. ~ 108. 삭제
- 109. 도로명 부여/변경/폐지
- 110. 건물번호 부여/변경/폐지
- 111.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 112. 도로명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업무 추진
- 113.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 114.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 추진
- 115. 도로명주소 전자지도 제공
- 116. 도시기준점 관리
- 117.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 118. 국가기초구역 관리 업무
- 119. 국가지점번호 관리 업무
- 120. 사물주소 부여 업무 추진
- 121.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 및 관리
- 122.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 123. 목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 업무
- 124. 목포시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및 관리 업무
- 125. 지적재조사사업 공개시스템 운영·유지관리
- 126.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 추진
- 127. 세계측지계 지적기준점 신설 및 관리

제4절의 제목과 제17조의 제목 “관광경제수산물국”을 “관광경제국”으로 한다.

제17조 중 “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해양항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수산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농업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환경보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를 “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지역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해양항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수산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제18조제58호부터 제60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8. 현안사업 분야별 브랜드 마케팅 홍보 업무 추진
59. 목포브랜드 개발관리 및 홍보
60. 영상홍보 매체별 동향 관리 및 조치(선제적 대응)

제19조(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정책 종합 기획. 조정 협의
2. 지역경제발전 기본계획 수립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교육
4. 지역경제 동향파악 관리
5. 경기분석 및 지표작성 관리
6. 경제자료 작성 및 관리
7.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경제정책 협의
8. 대규모 점포 등록. 지도관리
9. 전남서남부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운영 지도. 감독
10. 담배소매인의 지정 및 지도. 감독
11. 담배도매업 등록, 휴. 폐업 신고 접수
12. 담배도매업의 지도. 감독 및 행정처분
13. 전자상거래 업무 추진
14. 상거래질서 확립(가격표시제)
15. 미터법 통일 지도
16. 계량기 수리검정, 검사 및 부정계량기 단속

17. 계량기 수리업소 지도. 감독
18. 물가종합대책 수립 및 조정 총괄
19. 물가동향의 종합분석 및 조정
20.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21. 공공요금, 관인요금의 관리
22. 소비자 고발처리 및 보호대책 수립
23. 새마을금고의 합병 또는 분할의 승인
24. 지역경제분야 금융지원 업무 및 금융통화 자료 관리
2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계획
2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징수
27. 「복권 및 복권기금법」 홍보 및 계도
28. 복권위원회 업무협조. 지원
29. 대부업 등록. 변경. 폐업신고 및 지도. 감독
30. 대부업 영업정지. 등록 취소
31. 대부업자 등록수수료 징수
32. 대부업자 과태료 부과. 징수
33. 상표관리(부정경쟁 방지업무)
34. 방문. 통신판매업 등 신고 수리 및 지도. 감독
35. 품질표시 상품단속
36. 공산품 품질조사 및 품질경영 추진
37. 불량 공산품 단속
38. 불량 공산품 신고센터 운영
39. 으뜸장인상 제도 운영
40. 상정·소상공인 업무
41. 지식기반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시행
42. 테크노파크 조성 운영
43. 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기구 설치 운영
44. 나노산업 육성 및 관련기업 지원
45. 신소재. 나노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46. 신소재산업화지원센터 설치 운영
47. 산업디자인 개발사업
48. 생물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49. 생물산업 기술개발 및 기술인력 육성 지원 사업 추진
50. 생물산업 분야 산. 학. 연 기술협력사업 추진

51. 생물지원연구센터 설립 등 생물산업 관련 기반조성 업무
52. 바이오산업 발굴 및 육성
53. 첨단과학연구단지의 조성지원 사업
54. 과학기술진흥 및 연구개발 업무의 종합 기획 조정
55. 과학기술정보교류·홍보 및 학술활동 지원
56. 과학기술 사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57. 대학내 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련 시설(연구소 및 센터)운영 지원
58. 지역특성화 기술개발 사업
59.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자문관 활용 사업 지원
60. 기업체 기술지도 종합기획 조정
61. 지역기술 혁신센터(TIC) 지원
62. 정보벤처산업 육성 전략 수립
63. 정보벤처관련 기획조정 및 통제
64. 정보벤처산업 육성 및 지원체제 정비
65. 정보벤처기업 활성화 대책 협의
66. 정보벤처산업 관련 주요 시책개발 및 국비 확보
67. 벤처 정보마인드 확산을 위한 시민교육
68. 벤처지원센터 운영
69. 그 밖에 정보벤처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70. 지역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추진
71.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운영 관리
72. 문화산업지원센터 운영 관리
73. 문화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
74. 상공회의소 지원 업무
75. 국가산업단지 및 입주업체 지원
76. 국가산단 투자환경개선 추진
77. 지방산업단지 관리업무 지원
78. 삼진산업단지 분양 및 지도·감독
79. 산정농공단지 분양 및 지도·감독
80. 농공 및 산업단지 시설물 관리 및 유지 관리, 입주계약(변경)
81. 농공 및 산업단지 공장설립 완료 신고
82. 농공 및 산업단지 임대신고 및 분양 신고
83. 산업자원동원 충무계획수립 시행
84. 대불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지원

85. 보세지역 지정에 관한 업무
86. 지역 연구센터(RIC) 사업 육성
87. 노동조합 설립신고 변경. 해산 신고
88. 노동조합 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89. 노동조합 규약 및 결의처분 시정명령
90.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 및 공고
91. 노동조합 과태료 부과. 징수
92.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신고수리, 중지명령
93. 노동조합 단체협약체결 신고수리 및 시정명령
94. 노동조합 노동관계의 지원
95. 직장폐쇄의 신고. 수리
96. 광업권(조광권) 관리
97. 광산 보안 및 재해대책
98. 목포시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 및 운영
99. 유망 중소기업 육성. 지도
100. 다른 기관 중소기업 자금 지원
101. 중소기업제품 홍보. 판매. 참가 지원
102. 지방중소기업 육성 종합기획 조정
103. 기업애로사항 지도 및 해결.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
104. 제조업체 현황조사 및 관리
105. 공장등록증 민원 발급
106. 공장설립 등록 및 사후관리(폐업, 변경 등)
107. 공장의 소유자에 대한 보고. 검사 등
108. 시 경계 부근 공업단지 조성
109. 조선 관련 산업 지원 및 육성
110. 노동자 참여 세미나, 선진지 견학, 교육 등 지원 및 운영
111. 외국인 근로자 관련 각종 상담 등 외국인 콜센터 운영
112.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추진
113. 창업사업계획 승인 협의
114. 창업예비학교 운영
115. 창업보육센터 설치운영
116. 신산업 동향 파악 및 신산업 발굴 육성
117. 미래전략산업 업무 종합 기획·조정
118. 4차 산업혁명 대응 업무 조정·지원

119.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시책 발굴 지원
120. 4차 산업혁명 관련 동향 및 정보 파악·전파
121.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및 공약사업 추진
122.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추진
123.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추진
124. 신재생에너지 공동 특화사업 발굴 추진
125. 국제통상진흥시책 개발연구 및 종합기획 조정
12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지원 업무
127.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128. 수출진흥 계획 수립 추진(공산품, 가공식품, 농수산물)
129. 수출업체 육성·지원 및 유망수출제품의 해외 홍보
130. 수출입 계획·실적 총괄
131. 수출입 정보 및 자료 관리
132. 수출종합상담실 운영
133. 바이어 초청·안내·지원
134. 국제교류 협력증진 시책 연구
135. 국제자치단체간 자매결연 및 친선 우호협력 업무
136. 외국 민간단체와의 교류협력 업무
137. 외국 자치단체간 교류 인사영접 및 안내
138. 외국어 통역·번역 지원
139.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방안 연구
140. 국제 카페리션 취항지원 업무
141. 산업통상자원부소관 업무 중 다른 실과에 분장되지 아니한 사항
142. 지방해양수산청(항만관련부서 소관 제외) 업무 협의
143. 공예품 개발 및 지원
144. 투자유치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조정
145. 투자유치 지원제도·시책 및 인센티브 개발
146. 투자 유치 및 투자자에 대한 정보관리·자료제공 등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147. 투자유치기업 재정지원제도 운영
148.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운영
149. 투자유치자문관 운영·지원
150. 국내 잠재투자가 발굴 및 DB구축
151. 출향기업 등 국내기업 정보 수집 및 관리
152. 투자유치 프로젝트개발 및 타당성 분석

153. 투자유치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154. 잠재투자가 초청 투자설명회 개최
155. 유치기업 행정지원 및 고충사항 처리
156. 투자유치 원스톱(ONE-STOP)서비스 지원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157.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추진
158.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관련업무 총괄
159. 민간 투자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업무
160. 민간기업 외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161. 외자유치 업무
162.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관 운영. 지원
163. 외국인 투자가 정보수집 및 관리
164. 외국인 투자기업 고충 처리반 운영
165.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업무
166. 외국인 투자기업 사후관리
167. 외국인 투자지원(FOLLOW-UP) 관리에 관한 사항
168. 해외투자유치 전략 및 세부실행계획 수립
169. 해외투자 시장 분석
170. 해외투자자 초청 상담
171.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해외박람회 참가
172. 해외투자 발굴 및 투자유치단 파견
173. 외자투자·유치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
174. 투자유치 전반에 관한 사항
175. 산업단지 입주계약 심사 및 체결
176.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추진
177. 연료수급의 종합계획 수립
178.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 관리
179. 전기설비 사후관리
180. 전기용품 제조업 등록 및 사후관리
181. 불법·불량 전기용품 단속
182. 전기안전관리 대행업 등록 및 사후관리
183. 발전사업 허가 및 수급계약 인가
184. 유류수급 조정
185. 석유류판매업 등록 및 지도. 감독
186. 석유류 품질관리

187. 석탄 및 연탄수급 조정
188. 석탄가공업 허가 및 지도. 감독
189. 연탄품질 관리
190. 에너지관리 소비절약 추진
191. 에너지관리 지정업체 지도. 감독
192. 열사용 기자재 제조업체 지도. 감독
193. 열관리 시공협회 위탁업무 지도. 감독
194. 가스안전관리 계획 수립
195.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판매, 저장, 제조업, 충전)업소 지도 감독
196.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판매, 저장, 제조업, 충전) 허가 및 변경 허가
197.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및 지도. 감독
198. 도시가스시설 공사계획 승인 및 신고
199. 특정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 및 사용시설 사후 관리
200. 가스시설 시공자 지도. 감독
201. 도시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 지도. 감독
202. 녹색에너지연구원 설립. 운영. 지도. 감독
203. 에너지밸리 관련 업무 추진

제19조의2(일자리청년정책과)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
2. 목포시 일자리 총괄 관리
3. 취업정보센터운영 및 취업알선
4. 일자리창출 우수시군에 대한 업무
5.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업무
6. 고용위기지역 지원에 관한 업무
7. 일자리안정자금에 관한 업무
8. 협동조합기본법 추진에 관한 사항
9. 일자리지원에 관한 사항
10.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11. 공공근로사업 추진
12. 취업정보센터 운영 및 취업알선
13.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시행
14. 기능경기대회 지원
15. 사회적 기업에 관한 사항
16. 공공직업훈련원 지원 및 협조

17. 고용촉진훈련 업무 전반 (계획수립, 지원, 훈련기관 지도, 감독)
18. 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지도, 감독
19. 무허가 직업안내 행위 등 지도, 단속
20.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1. 재정지원사업(지역공동체, 공공근로)에 관한 업무
22.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23.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에 관한 업무
24. 산학연 연관 사업에 관한 업무
25. 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업무
26. 전남 청년 마을로, 내일로 프로젝트 추진
27. 전남 동행 일자리사업 추진
28. 전남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
29. 4050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30.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31. 청년일자리 창출 및 자립기반 구축 지원
32. 청년 인력 양성 및 지원
33. 청년 관련 단체 지원 및 관리
34. 청년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35. 청년취업 및 창업·창직 지원
36. 청년일자리 신규시책 발굴 및 사업화 추진
37. 청년취업아카데미 및 취업컨설팅 지원

제21조의 제목 “**농업산업과**”를 “**농업정책과**”로 한다.

제21조의 내용 중 “**농업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를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로 하고, 제9호부터 제10호, 제155호부터 제185까지를 삭제한다.

9. ~ 10. 삭제

155. ~ 185. 삭제

제22조,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5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5. 스마트시티 관련 업무

제32조 중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을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로 한다.

관으로”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제4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9. 목포시 의료원 재정지원 및 예산·결산·관리 업무 지도·감독

제32조제4항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제1절 교육문화사업단을 환경관리사업단으로 한다.

제34조(하부조직)을 삭제하고, 제34조의2(하부조직)을 신설한다.

제34조의2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환경보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시설관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4조의2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2. 환경영향평가, 환경성 검토, 환경분쟁 조정
3. 환경오염 특별대책 지역내의 토지이용 시설 제한
4.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5. 자연보호 종합계획 수립 시행
6. 자연정화 활동의 주관 및 지도
7. 자연보존물, 자연보호 시설물 지정, 조성 및 관리
8. 자연보호조직의 육성, 관리
9. 자연보호 계도 단속 및 홍보 활동 전개
10. 자연발생 유원지 종합관리 대책 추진
11. 자연정화 및 중역권 수질보존 업무
12. 야생조수보호 업무
13. 민간 환경단체 관리, 지원, 협의 업무
14. 기타 자연보호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15. 수변구역 관리
16. 과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업무
17. 환경백서 발간

18. 지방의제 21 추진에 관한 사항
19. 수렵면허 등에 관한 업무
20. 조수, 포획 승인 등에 관한 업무
21. 환경보전대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22. 특정수질유해물질의 관리
23. 「영산강, 섬진강 수계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행
24. 영산호, 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25.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추진
26. 공중화장실 설치, 개보수 및 지도, 점검 등 관리 총괄(유달공원, 외달도, 고하도 공중화장실 제외)
27.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28.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 등록 및 행정처분
29.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30.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변경)신고 및 지도, 감독
31.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32.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신고) 및 행정처분
33. 분뇨 등 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대행관리
34. 토양환경보존에 관한 사무
35. 토양측정망 운영관리
36. 특정 토양오염 유발시설 신고 및 행정처분
37. 사업장별 오염부하량 할당 및 관리
38. 배출시설의 설치, 변경 신고 허가
39.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40.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41. 환경소음 측정망 운영관리
42. 소음, 진동규제 지역 지정, 규제기준 설정 및 통제
43. 수질, 대기, 소음, 진동 악취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44. 기타 수질오염원 지도, 단속에 관한업무
45.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
46.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행정처분
47. 운행차 확인 검사대행자 등록 및 관리
48. 특정공사 사업장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49. 수질(하천, 호수) 오염행위 지도, 단속 및 오염사고 처리

50. 농경지 오염방지 및 (기름)오염농수산물 폐기
51. 지정 폐기물 운반통제 및 수질오염 물질의 제거명령
52.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점검 및 행정처분
53.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사항
54.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55.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56.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 및 지도 감독
57.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 및 지도 감독
58. 가축분뇨 관련 영업허가(신고) 및 행정처분
59. 오염총량관리 시행 계획 수립, 시행
60. 전국오염원 조사에 관한 업무
6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관리
62.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6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 신고 및 지도, 점검
64. 친환경상품 구매에 관한 사항
65. 대기오염측정망 관리
66. 저탄소 녹색성장 총괄
67.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관리 및 지원
68.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69.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제34조의2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행정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2. 청소장비 운영계획 및 관리
3. 환경미화원 임면 및 지도, 감독
4. 환경미화원 노조 관련 업무 추진
5. 시가지 청소상태 점검 및 취약지 중점관리
6. 위반쓰레기 배출 및 무단투기 지도, 단속
7. 쓰레기종량제 종합계획 수립 시행
8. 쓰레기종량제 위반자 청문 및 과태료 부과
9.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공급판매에 관한 사항
10. 폐기물 매립 및 소각시설계획 수립 및 관리
11.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시행
12. 폐기물 다량 배출자 신고처리 및 지도, 점검

13.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지도단속, 행정처분
14. 폐기물 처리업 허가
15. 폐기물 통계 조사
16. 폐기물 재활용업소 신고 및 지도 점검
17. 폐기물 보관용기(물온박스 등) 보급 및 관리
18. 대형폐기물 분리수거에 관한 사항
19.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20.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21. 건설폐기물 신고
22. 사업장 폐기물(지정폐기물제외) 처리에 관한 사항
23. 사업장 폐기물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24. 사업장 폐기물 관련 생활민원 처리
25.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실적보고
26. 지정폐기물 배출자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27. 지정폐기물에 관한 업무
28. 감염성 폐기물에 관한 업무
29. 감염성 폐기물 배출자 지도 점검 및 처분
30.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등 감량화 추진
31. 음식물 공공처리 시설 설치
3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및 처분
33. 음식물류 폐기물수거 운반 수수료 부과 징수
34.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 업무
35. 비위생매립지 관리 및 정비사업
36. 위생 및 비위생매립지 사후 관리
37. 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38. 재활용 수집 등록단체 및 신고업소 지도, 관리(고물상)
39. 재활용품 수집
40.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41. 재활용품 판매, 세입관리
42. 재활용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보수 전반에 관한 사항
43. 재활용 가능 폐기물 선별, 압축 및 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44. 1회용품 감량화 추진
45. 나눔장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34조의2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 회계,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 반입폐기물의 계량 및 통계
3. 반입폐기물 수수료의 과징
4. 반입폐기물의 위생적 매립처리
5. 주변마을 주민 환경위생사업
6.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건강진단
7. 매립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8. 매립장에서 발생된 가스의 성분조사 및 처리
9. 매립장 및 주변마을 방역소독
10. 매립장내에 발생된 악취제거에 관한 사항
11. 매립용중장비 및 차량관리
12. 침출오수의 적정처리 및 우수배제에 관한 사항
13. 침출수 및 지하수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14. 폐기물 매립 후 사후관리
15. 가압장 관리
16.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자원화시설 운영
17. 각종 부대시설 관리 유지
18. 기타 처리시설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19. 환경에너지센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0.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제4장제2절제36조 제1항 중 “상하수도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수도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수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남해환경관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북항환경관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를 “수도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수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남해수질관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북항수질관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제3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6조제3항 제61호부터 제8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1. 상수도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62. 상수도사업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
63. 상수도사업회계 현금출납 및 금고감독
64. 상수도사업회계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 보관
65. 상수도사업회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지방채관리
66. 상수도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 구매, 기타의 계약
67. 상수도사업 회계 결산, 경영평가 관리
68. 상수도사업 회계 공인관수 및 문서 관리
69. 상수도 공기업회계 행정재산 유지관리
70. 상수도사업 시설용지 취득 및 처분과 용지보상
71. 상수도재산 임대료 부과 및 징수
72. 상수도사업 회계 자재수불 및 보관 유지 관리
73. 상수도사업용 차량관리
74. 상수도사업 회계 은닉재산 색출 및 소유권확보
75. 상수도사업 회계 세입금 관리
76.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77. 상수도 사용료 이의신청 처리
78. 상수도요금 인상 및 조정 관리
79. 시외급수의 검침과 사용료 과징
80. 부정수도 사용자 및 시설 신고(수도계량기 검침원)
81. 급수공사 시공명령
82. 급수전 명의변경
83. 수도계량기 시험의뢰 신청 접수
84. 다량 수도사용수용가 관리
85. 물이용 부담금에 관한 사항
86. 재산의 대부,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87. 재산의 시가조사 및 가격 평가에 관한 사항

제36조제4항 제27호부터 제4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하수도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8. 하수도사업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
29. 하수도사업회계 현금출납 및 금고감독
30. 하수도사업회계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 보관
31. 하수도사업회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지방채관리
32. 하수도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 구매, 기타의 계약

33. 하수도사업 회계 결산, 경영평가 관리
34. 하수도사업 회계 공인관수 및 문서 관리
35. 하수도 공기업회계 행정재산 유지관리
36. 하수도사업 시설용지 취득 및 처분과 용지보상
37. 하수도재산 임대료 부과 및 징수
38. 하수도사업 회계 자재수불 및 보관 유지 관리
39. 하수도사업용 차량관리
40. 하수도사업 회계 은닉재산 색출 및 소유권확보
41. 하수도사업 회계 세입금 관리
42.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43. 하수도 사용료 이의신청 처리
44. 하수도요금 인상 및 조정 관리
45. 재산의 대부,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46. 재산의 시가조사 및 가격 평가에 관한 사항
47. 하천, 하수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점·사용료 부과 징수
48. 하수도 배출량 조사
49.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제36조제5항 중 “**남해환경관리과장은**”을 “**남해수질관리과장은**”으로 한다.

제36조제6항 중 “**북항환경관리과장은**”을 “**북항수질관리과장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도시재생과장, 도시개발과장은**”을 “**도시재생과장, 도시문화재과장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제1호부터 제27호까지를 삭제하고, 제28호부터 제4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 27. 삭제
28. 목포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9.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한 사항
30.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
31.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처연계사업 추진
32.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한 사항
33.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
34.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처연계사업 추진

35. 목포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한 사항
36.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
37.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38. 도시재생 역량강화 사업 추진 및 관리
39. 도시재생사업 관련 보상업무 추진
40. 도시재생사업 문화콘텐츠 개발 관련 업무 추진
41. 도시재생 선도지역 시설물 유지관리
42. 도시재생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지원 추진
43. 도시재생 기금 융자 관련 업무 추진
44. 도시재생 뉴딜사업 프로젝트팀 지원
45.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관리
46. 도시재생 사회적경제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 지원관리
47. 도시재생위원회 및 도시재생 전략회의 등 각종 위원회 관리
48. 도시재생사업 예산 및 지출 관련 업무
49. 그밖에 도시재생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50. 지역밀착형 생활SOC 관련 업무

제38조제3항 중 “도시개발과장은”을 “도시문화재과장은”으로 한다.

제38조제3항 제44호, 제53호를 삭제하고, 제54호부터 제96호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4. 삭제
53. 삭제
54. 원도심 개발관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계획 수립 및 유치활동에 관한 사항
55. 원도심 개발관련 국책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6. 원도심 활성화 종합대책 추진
57. 원도심지역 특화의 거리 조성
58. 도시개발사업 관련 보상업무 추진
59. 원도심 입점업체 임대료 지원
60. 원도심 특화거리 내 건물수선비 지원
61. 원도심 상가 활성화 현안사업 추진
62. 원도심권 기반시설 조성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현안사업 추진
63. 주거환경 개선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64.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 소방도로 개설 등 각종 사업 추진
65. 삼학도복원화 사업
66. 삼학도 해양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추진

67. 원도심 재개발 종합계획 수립 시행
68. 원도심 재개발 관련 민간자본 유치계획 수립 및 유치활동에 관한사항
69. 원도심 재개발 및 뉴타운조성, 도시개발사업 관련 보상업무 추진
70. 행정타운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
71. 구) 가톨릭병원 성지조성 현황 관리
72. 서남권 수산물유통센터 재건축(광동상가) 및 진입도로 확장 공사
73. 서산·온금지구 재개발사업 사업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
74. 서산·온금지구 재개발사업 관련 기반시설사업 추진
75. 도심관통도로(7호광장 ~ 구)중앙공설시장간) 개설
76. 만호지구 주거지 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77. 산정초등학교 뒤편 도로개설
78. 대성동 연산배수지 일원 도로개설
79. 2025 목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0.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81. 유형문화재 보존관리
82. 무형문화재 보전전승 관리
83. 무형문화재 지정신청
84.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위탁관리
85. 매장문화재 발굴계획
86. 문화재 매매업소 지도감독
87.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계획
88. 국가문화재 현상변경 승인
89. 목포근대역사관(동척) 운영·관리
90. 목포 만호진 역사공원화 조성사업 종합계획
91. 목포시 문화유산위원회 운영
92. 목포시사 편찬에 관한 사항
93. 기타 일반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항
94. 황해교류역사관 업무 전반
95.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96. 문화재청 문화재관련사업

제4장 제4절을 삭제한다.

제39조, 제40조를 삭제한다.

제4장 제4절의1 문예시설관리사무소를 신설한다.

제39조의1(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0조의1(분장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방호·방화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2. 입장권(열람권) 등의 발급·검인·검표, 시설물 사용료 징수 등
3. 재산관리·시설물 종합관리 및 개보수 등 영선에 관한 사항
4. 조경 및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5. 냉난방, 통신, 전기, 기계, 음향, 소방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관리
6. 문화예술전시·공연행사 홍보 및 기록유지
7. 공연계획 및 공연장 대관 사용에 관한 사항
8. 공연물 제작·홍보 및 공연물품 수급에 관한 사항
9. 관람객 안내 및 안전관리
10. 공연장, 연습실, 분장실관리
11. 전시계획 및 전시실 대관 사용에 관한 사항
12. 소장품 관리 및 미술활동의 홍보·보급에 관한 사항
13. 전시 소품, 공연 소품 유지관리
14. 기타 무대운영 및 문화예술회관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15. 시민문화체육센터(공연장, 일반음식점) 운영에 관한 사항
16. 목포문학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장 제4절의2 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신설한다.

제39조의2(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0조의2(분장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 회계,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 청사 방호·방화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체육시설의 입장료, 관람료, 사용료 관리
5. 체육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6. 체육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7. 체육시설 운영관리
8. 궁도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9. 부주산 체육시설물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10. 각종 기계장비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4장제4절의3 목포자연사박물관을 신설한다.

제39조의3(관장의 직급) 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제40조의3(분장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 및 입장권 매·검표 관리
2. 재산관리·청사 시설유지 관리 및 방화·방호에 관한 사항
3. 전시시설 임대에 관한 사항
4. 관람객 안내 및 안전관리
5. 박물관 정보시스템(전산·영상·홈페이지)운영 관리
6. 박물관에 관한 백서, 간행물의 제작 및 대외홍보 사항
7.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강연회, 연구회 등 개최
8. 박물관 특별전시 및 기획전시 계획수립 및 시행
9. 박물관 잔디공원, 비파원 및 주차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0. 박물관의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기타 박물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12. 소장품의 조사·연구 및 수집, 기증, 기탁에 관한 사항
13. 소장품 관리·전시 및 전산화 등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14. 소장품 훈증 및 소독, 복원에 관한 사항
15. 소장품 보존 환경조사 연구 및 지원 사항
16. 자연사에 속하는 지질, 동·식물, 곤충, 해양생물, 조·포유류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17. 자연사 및 향토사 조사 연구에 관한 학술단체 또는 민간인과의 협력 및 지원
18. 향토문화자료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19. 학술조사 연구 및 연구결과의 보급, 선양에 관한 사항
20.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전시품 관리
21.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수장고 소장유물 관리
22.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전시회 개최
23. 목포생활도자박물관 활성화계획 수립·추진
24.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전시품 수집 및 연구
25. 도자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6. 체험공방 프로그램 운영
27.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전시품 관리
28.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수장고 소장품 관리
29.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정보시스템(전산·영상·홈페이지) 운영 관리
30.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전시회 개최

31.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활성화계획 수립·추진

32. 그 밖의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기획문화국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기획문화국장**”으로 한다.

② “목포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기획문화국장**”으로 한다.

제7조 중 “**기획관리국장**”을 “**기획문화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기획문화국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기획문화국장**”으로 한다.

③ “목포시 벤처기업과 지식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④ “목포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기획문화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관광수산경제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⑤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기획문화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관광경제수산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⑥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관광경제수산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⑦ “목포시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관광경제수산국장**”을 “**환경관리사업단장**”으로 한다.

⑧ “목포시립예술단체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문화사업단장**”을 “**기획문화국장**”으로 한다.

⑨ “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감사실, 기획예산과, 공보과, 세정과, 일자리정책과, 회계과, 정보통신**”

과,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 의회사무국, 보건소, 교육체육과, 문화예술과, 문예시설관리과, 체육시설관리과, 자연사박물관"을 "감사실, 기획예산과, 문화예술과, 공보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자치행정과, 교육체육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 의회사무국, 보건소,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목포자연사박물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성장동력실, 관광과,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농업산업과,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상하수도행정과, 수도과, 하수과, 남해환경관리과, 북해환경관리과, 환경시설관리사무소"를 "기업유치실, 관광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정책과,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농업정책과,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환경시설관리과, 수도과, 하수과, 남해수질관리과, 북해수질관리과"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건축행정과,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사무소,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를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건축행정과,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사무소, 도시재생과, 도시문화재과"로 한다.

⑩ "목포시 위생매립장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목포시환경시설관리소장"을 "환경시설관리과장"으로 한다.

⑪ "목포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1호 중 "상하수도행정과장"을 "수도과장"으로 한다.

⑫ "목포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가목 중 "상하수도행정과장"을 "하수과장"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나목 중 "북해환경관리과, 남해환경관리과"를 "남해수질관리과, 북해수질관리과"로 한다.

⑬ "목포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1호 중 "도시개발과장"을 "도시문화재과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중 "관리담당주사"를 "공영개발담당주사"로 한다.

제2조제1항 제7호를 삭제한다.

⑭ "목포시 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목포시문예시설관리과"를 "문예시설관리사무소"로 한다.

⑮ "목포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상하수도행정과장"을 "수도과장"으로 한다.

⑯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상하수도행정과"를 "수도과"로 한다.

[별표 1]

동 장 의 직 급(제43조 관련)

기 관 별	직 위	직 급	기 관 별	직 위	직 급
용당 1동 행정복지센터	용당1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죽 교 동 행정복지센터	죽교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용당 2동 행정복지센터	용당2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북 향 동 행정복지센터	북향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연 동 행정복지센터	연 동 장	지방행정사무관	용 해 동 행정복지센터	용해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산 정 동 행정복지센터	산정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이 로 동 행정복지센터	이로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연 산 동 행정복지센터	연산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상 동 행정복지센터	상 동 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원 산 동 행정복지센터	원산동장	지방행정사무관	하 당 동 행정복지센터	하당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대 성 동 행정복지센터	대성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신 흥 동 행정복지센터	신흥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목 원 동 행정복지센터	목원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삼 향 동 행정복지센터	삼향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동 명 동 행정복지센터	동명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옥 암 동 행정복지센터	옥암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삼 학 동 행정복지센터	삼학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부 흥 동 행정복지센터	부흥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만 호 동 행정복지센터	만호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부 주 동 행정복지센터	부주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유 달 동 행정복지센터	유달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직무) 감사실장 · 성장동력실장 은 부시장을, 과 · 소 · 지소장은 국 · 소 · 단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제2조(직무) 감사실장 · 기업유치실장 --- ----- -----.
제3조의2(성장동력실) ① 성장동력실장 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 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조의2(기업유치실) ① 기업유치실장 -----.
② 성장동력실장 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② 기업유치실장 -----.
1. ~ 28. (생 략)	1. ~ 28. (현행과 같음)
29. 신성장동력산업 발굴 및 기업유치	29. <삭 제>
30. 에너지밸리 관련 업무 추진	30. <삭 제>
<신 설>	31. 산업단지 조성(공사부분) 및 대지 조성사업
	32. 산업단지 기업유치 기반시설 지원 (토지분할 등)
	33. 산업단지 실시계획 인허가 업무
	34. 대양산단 금융약정 관련 사항
	35. 대양산단 청산관련 사항
	36. 대양산단 미분양용지 취득 및 처분업무
제2절 기획관리국	제2절 기획문화국
제4조(기획관리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 · 공보과장 · 세정과장 · 일자리정책과장 · 회계과장 은 지방행 정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과장 은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전산사무관 또는 지방통신 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기획문화국) ----- 기획예산과장 · 문화예술과장 · 공보과장 · 세정과장 · 회계과장 은 지방행정사무관 으로, 정보통신과장 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5조(기획예산과) ----- ---

1. ~ 42. (생 략)

43. 목포시 의료원 재정지원 및 예산·
결산·관리 업무 지도·감독

44. ~ 99.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1. ~ 42. (현행과 같음)

43. <삭 제>

44. ~ 99. (현행과 같음)

100. 정부혁신 대응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101. 정부혁신 추진과제 발굴 및 관리

102. 정부혁신 추진체계 구축·운영

103. 정부혁신 교육·홍보 및 성과관리

104. 세무조사·채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105.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106.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
련한 사항

제5조2(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종합
기획 조정

2. 문화·예술행사 운영(시립예술단체
행사 제외)

3.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지도 육성

4. 문예진흥기금 운영·관리

5.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6.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금의 조
성·관리 및 운용

7.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8. 예술촌 조성 및 운영

9. 평화광장 야외무대 유지 관리

10. 문화의 집 조성 및 운영·관리

11. 목포문화재단 운영

12. 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13. 작은 어린이도서관 운영 관리
14.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관리
15. 건축물 미술장식품 설치·심의
16. 야외놀이마당 유지관리
17. 출판사 및 인쇄소 신고, 변경신고 및 관리
18. 공연장 등록·변경·폐업처리·승계 사항 처리
19. 공연장 지도·감독
20. 영화상영 신고 수리
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22.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23. 목포를 빛낸 명인선정 및 조형물 설치
24.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25. 거주외국인 각종 문화예술행사 초청 및 참여
26. 거주외국인 지역유적지 답사, 문화 체험, 각국 기념일 행사 지원
27. 노적봉 예술공원 운영·관리
28. 전시작품 구입 및 수집에 관한 사항
29. 공연작품 기획, 제작, 공연에 관한 사항
30.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유치, 조성
31. 유달예술타운 운영·관리
32. 그 밖에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제7조(세정과) 세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9. (생략)

30. 납세자 관리현장에 관한 사항

31. 세무 고충민원 처리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2. ~ 89. (생략)

제7조(세정과) -----.

1. ~ 29. (현행과 같음)

30. <삭제>

31. <삭제>

32. ~ 89.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

1. 경제정책 종합 기획. 조정 협의
2. 지역경제발전 기본계획 수립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교육
4. 지역경제 동향과악 관리
5. 경기분석 및 지표작성 관리
6. 경제자료 작성 및 관리
7.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경제정책 협의
8. 지식기반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시행
9. 테크노파크 조성 운영
10. 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기구 설치 운영
11. 나노산업 육성 및 관련기업 지원
12. 신소재. 나노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13. 신소재산업화지원센터 설치 운영
14. 산업디자인 개발사업
15. 생물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16. 생물산업 기술개발 및 기술인력
육성 지원 사업 추진
17. 생물산업 분야 산. 학. 연 기술
협력사업 추진
18. 생물지원연구센터 설립 등 생물
산업 관련 기반조성 업무
19. 바이오산업 발굴 및 육성
20. 첨단과학연구단지의 조성지원 사업
21. 과학기술진흥 및 연구개발 업무의
종합 기획 조정
22. 과학기술정보교류. 홍보 및 학술
활동 지원
23. 과학기술 사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24. 대학내 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련
시설(연구소 및 센터)운영 지원
25. 지역특성화 기술개발 사업

26.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자문관
활용 사업 지원
27. 기업체 기술지도 종합기획 조정
28. 지역기술 혁신센터(TIC) 지원
29. 정보벤처산업 육성 전략 수립
30. 정보벤처관련 기획조정 및 통제
31. 정보벤처산업 육성 및 지원체제 정비
32. 정보벤처기업 활성화 대책 협의
33. 정보벤처산업 관련 주요 시책개발
및 국비 확보
34. 벤처 정보마인드 확산을 위한 시민교육
35. 벤처지원센터 운영
36. 그 밖에 정보벤처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37. 지역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추진
38.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운영 관리
39. 문화산업지원센터 운영 관리
40. 문화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
41. 상공회의소 지원 업무
42. 국가산업단지 및 입주업체 지원
43. 국가산단 투자환경개선 추진
44. 지방산업단지 관리업무 지원
45. 삼진산업단지 분양 및 지도. 감독
46. 산정농공단지 분양 및 지도. 감독
47. 농공 및 산업단지 시설물 관리 및
유지 관리, 입주계약(변경)
48. 농공 및 산업단지 공장설립 완료 신고
49. 농공 및 산업단지 임대신고 및 분양 신고
50. 산업자원동원 충무계획수립 시행
51. 대불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지원
52. 보세지역 지정에 관한 업무
53. 지역 연구센터(RIC) 사업 육성
54. 노동조합 설립신고 변경. 해산 신고
55. 노동조합 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56. 노동조합 규약 및 결의처분 시정명령
57.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 및 공고
58. 노동조합 과태료 부과. 징수
59.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신고수리, 중지명령
60. 노동조합 단체협약체결 신고수리 및 시정명령
61. 노동조합 노동관계의 지원
62. 직장폐쇄의 신고. 수리
63. 광업권(조광권) 관리
64. 광산 보안 및 재해대책
65. 목포시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 및 운영
66. 유망 중소기업 육성. 지도
67. 다른 기관 중소기업 자금 지원
68. 중소기업제품 홍보. 판매. 참가 지원
69. 지방중소기업 육성 종합기획 조정
70. 기업애로사항 지도 및 해결. 산업 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
71. 제조업체 현황조사 및 관리
72. 공장등록증 민원 발급
73. 공장설립 등록 및 사후관리(폐업, 변경 등)
74. 공장의 소유자에 대한 보고. 검사 등
75. 시 경계 부근 공업단지 조성
76. 조선 관련 산업 지원 및 육성
77. 노동자 참여 세미나, 선진지 견학, 교육 등 지원 및 운영
78. 외국인 근로자 관련 각종 상담 등 외국인 콜센터 운영
79.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추진
80. 창업사업계획 승인 협의
81. 창업예비학교 운영

82. 창업보육센터 설치운영
83. 국제통상진흥시책 개발연구 및
종합기획 조정
8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ITA) 지원 업무
85.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86. 수출진흥 계획 수립 추진(공산품,
가공식품, 농수산물)
87. 수출업체 육성. 지원 및 유망수
출제품의 해외 홍보
88. 수출입 계획. 실적 총괄
89. 수출입 정보 및 자료 관리
90. 수출종합상담실 운영
91. 바이어 초청. 안내. 지원
92. 국제교류 협력증진 시책 연구
93. 국제자치단체간 자매결연 및 친선
우호협력 업무
94. 외국 민간단체와의 교류협력 업무
95. 외국 자치단체간 교류 인사영접 및 안내
96. 외국어 통역. 번역 지원
97.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방안 연구
98. 국제 카페리션 취항지원 업무
99. 산업통상자원부소관 업무 중 다른
실과에 분장되지 아니한 사항
100. 지방해양수산청(항만관련부서 소관
제외) 업무 협의
101. 협동조합기본법 추진에 관한 사항
102. 일자리지원에 관한 사항
103.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104. 공공근로사업 추진
105. 취업정보센터 운영 및 취업알선
106.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시행
107. 기능경기대회 지원
108. 사회적 기업에 관한 사항

- 109. 공공직업훈련원 지원 및 협조
- 110. 고용촉진훈련 업무 전반 (계획수립, 지원, 훈련기관 지도, 감독)
- 111. 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지도, 감독
- 112. 무허가 직업안내 행위 등 지도, 단속
- 113.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114. 공예품 개발 및 지원
- 115. 투자유치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 시행 · 조정
- 116. 투자유치 지원제도 · 시책 및 인센티브 개발
- 117. 투자 유치 및 투자자에 대한 정보 관리 · 자료제공 등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 118. 투자유치기업 재정지원제도 운영
- 119.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운영
- 120. 투자유치자문관 운영 · 지원
- 121. 국내 잠재투자가 발굴 및 DB구축
- 122. 출향기업 등 국내기업 정보 수집 및 관리
- 123. 투자유치 프로젝트개발 및 타당성 분석
- 124. 투자유치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 125. 잠재투자가 초청 투자설명회 개최
- 126. 유치기업 행정지원 및 고충사항 처리
- 127. 투자유치 원스톱(ONE-STOP)서비스 지원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 128. 국내 · 외 기업 투자유치 추진
- 129.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관련업무 총괄
- 130. 민간 투자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업무
- 131. 민간기업 외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 132. 외자유치 업무
- 133.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관 운영, 지원

- 134. 외국인 투자가 정보수집 및 관리
- 135. 외국인 투자기업 고충 처리반 운영
- 136.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업무
- 137. 외국인 투자기업 사후관리
- 138. 외국인 투자지원(FOLLOW-UP)
관리에 관한 사항
- 139. 해외투자유치 전략 및 세부실행
계획 수립
- 140. 해외투자 시장 분석
- 141. 해외투자자 초청 상담
- 142.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해외박람회 참가
- 143. 해외투자 발굴 및 투자유치단 파견
- 144. 외자투자·유치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
- 145. 투자유치 전반에 관한 사항
- 146. 산업단지 입주계약 심사 및 체결
- 147.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 148. 청년일자리 창출 및 자립기반
구축 지원
- 149. 청년 인력 양성 및 지원
- 150. 청년 관련 단체 지원 및 관리
- 151. 청년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52.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추진
- 153. 연료수급의 종합계획 수립
- 154.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 관리
- 155. 전기설비 사후관리
- 156. 전기용품 제조업 등록 및 사후관리
- 157. 불법·불량 전기용품 단속
- 158. 전기안전관리 대행업 등록 및
사후관리
- 159. 발전사업 허가 및 수급계약 인가
- 160. 유류수급 조정
- 161. 석유류판매업 등록 및 지도·감독

162. 석유류 품질관리
163. 석탄 및 연탄수급 조정
164. 석탄가공업 허가 및 지도. 감독
165. 연탄품질 관리
166. 에너지관리 소비절약 추진
167. 에너지관리 지정업체 지도. 감독
168. 열사용 기자재 제조업체 지도 감독
169. 열관리 시공협회 위탁업무 지도 감독
170. 가스안전관리 계획 수립
171.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판매, 저장, 제조업, 충전)업소 지도 감독
172.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판매, 저장, 제조업, 충전) 허가 및 변경 허가
17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및 지도. 감독
174. 도시가스시설 공사계획 승인 및 신고
175. 특정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사용 신고 및 사용시설 사후 관리
176. 가스시설 시공자 지도. 감독
177. 도시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 지도 감독
178. 녹색에너지연구원 설립 운영 지도 감독

제10조(자치행정복지국) 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자치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사회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여성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민원봉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1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자치행정복지국) -----

- 교육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으로, 사회복지과장-----

-----.

제11조(자치행정과) -----

-----.

1. ~ 113. (생 략)

<신 설>

<신 설>

1. ~ 113. (현행과 같음)

114.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제12조(교육체육과) 교육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중·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분야 지원 및 시책발굴에 관한 사
항
2. 초·중·고 우수학생 표창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초·중·고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4.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교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목포장학재단 지도감독 및 인재육성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7.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평생학습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사항
9. 평생교육 발전계획 수립 및 학습
진흥에 관한 사항
10.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11.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2.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14. 평생학습 정보 제공 및 학습 상담에
관한 사항
15. 평생학습 축제 개최에 관한 사항
16. 평생학습 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7. 평생교육 강사풀제 운영에 관한 사항
18.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9. 목포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20. 목포시 평생학습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1. 평생교육 기관, 동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운영·지원
22. 동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3. 동 주민사랑방 강사, 자원봉사 요원 지원
24. 동 주민사랑방 물품관리 일반사항
25. 동 주민사랑방 운영실적 평가 분석
26. 동 주민사랑방 운영비 등 경상예산 지원
27. 동 주민사랑방 거주외국인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8.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9. 서남권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
30. 성인 문해 교육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1.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32. 거주외국인에 대한 사회적응(한글 및 한국어) 교육 지원
33. 체육진흥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34. 재단법인 체육진흥회업무에 관한 사항
35.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36.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및 지도·육성
37. 생활체육 동호인 지도·육성
38. 각종 생활체육 동호인대회 지원 및 운영·관리
39. 체육회 관련 업무지도
40. 각종 체육행사주관 및 지도·관리
41.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 시설 설치
4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업의 등록신고
등 지도·감독

43. 체육회소속 경기단체 주관 자전거
대회 지원 업무

44. 직장체육활동의 지원

45. 직장 체육팀의 지도·육성

46. 직장운동부 운영관리 (하키팀, 육상팀,
축구팀)

47.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48.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49. 스포츠 이벤트 개최

50. 스포츠 마케팅 및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51. 스포츠관광 홈페이지 구축

52. 스포츠관광 프로그램 발굴

53. 청소년 스포츠클럽 지도·감독

54. 목포축구센터 지도·감독

55. 거주외국인 각종 체육행사 초청 및
참여 지원

56. 기타 체육업무에 관한 사항

57. 전국체전·장애인체전 기본계획 수립

58. 전국체전·장애인체전 운영위원회 구성

59. 전국체전·장애인체전 개·폐회식
운영 지원

60. 전국체전·장애인체전 개최 홍보

61. 전국체전·장애인체전 문화예술행사 추진

62. 목포종합운동장 건립

63. 그 밖에 전국체전·장애인체전에
관한 사항

제16조(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8. (생략)

79. 도로명 및 건물번호(도로명주소)

제16조(민원봉사실) -----

1. ~ 78. (현행과 같음)

<삭제>

부여 / 변경

80. (생 략)

81. 시설물(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설치·관리·개량

82. 도로명주소 통합센터 운영 및 데이터 실시간 정비

83. 도로명 등 도로명주소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84. (생 략)

85. 도로명주소 DB 제공(각급기관, 기업 등)

86. ~ 100. (생 략)

101. GIS 측량기준점 관리

102. (생 략)

103. 생활지리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104. ~ 105. (생 략)

106.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업무 추진

107. 국가기초구역 업무 관리

108. 국가지점번호 업무 관리

<신 설>

80. (현행과 같음)

<삭 제>

84. (현행과 같음)

<삭 제>

86. ~ 100. (현행과 같음)

<삭 제>

102. (현행과 같음)

<삭 제>

104. ~ 105. (현행과 같음)

<삭 제>

109. 도로명 부여/변경/폐지

110. 건물번호 부여/변경/폐지

111.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112. 도로명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업무 추진

113.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114.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 추진

115. 도로명주소 전자지도 제공

116. 도시기준점 관리

117.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118. 국가기초구역 관리 업무

119. 국가지점번호 관리 업무

120. 사물주소 부여 업무 추진

제4절 **관광경제수산물국**

제17조(**관광경제수산물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해양항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물사무관으로, 수산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물사무관으로, **농업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환경보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8조(관광과) 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7. (생략)

<신설>

- 121.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 및 관리
- 122.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 123. 목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 업무
- 124. 목포시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및 관리 업무
- 125. 지적재조사사업 공개시스템 운영·유지관리
- 126.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 추진
- 127. 세계측지계 지적기준점 신설 및 관리

제4절 **관광경제국**

제17조(**관광경제국**) -----
 --- 관광과장, **지역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해양항만과장-----

 ----- **농업정책과장**-----
 -----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8조(관광과) -----.

1. ~ 57. (현행과 같음)

58. **현안사업 분야별 브랜드 마케팅 홍보 업무 추진**

<신 설>

<신 설>

59. 목포브랜드 개발관리 및 홍보

60. 영상홍보 매체별 동향 관리 및 조치
(선제적 대응)

제19조(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정책 종합 기획, 조정 협의
2. 지역경제발전 기본계획 수립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교육
4. 지역경제 동향파악 관리
5. 경기분석 및 지표작성 관리
6. 경제자료 작성 및 관리
7.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경제정책 협의
8. 대규모 점포 등록, 지도관리
9. 전남서남부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
센터 운영 지도, 감독
10. 담배소매인의 지정 및 지도 감독
11. 담배도매업 등록, 휴·폐업 신고 접수
12. 담배도매업의 지도 감독 및 행정처분
13. 전자상거래 업무 추진
14. 상거래질서 확립(가격표시제)
15. 미터법 통일 지도
16. 계량기 수리검정, 검사 및 부정
계량기 단속
17. 계량기 수리업소 지도, 감독
18. 물가종합대책 수립 및 조정 총괄
19. 물가동향의 종합분석 및 조정
20.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21. 공공요금, 관인요금의 관리
22. 소비자 고발처리 및 보호대책 수립
23. 새마을금고의 합병 또는 분할의 승인
24. 지역경제분야 금융지원 업무 및
금융통화 자료 관리
2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계획

2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징수
27. 「복권 및 복권기금법」 홍보 및 계도
28. 복권위원회 업무협조. 지원
29. 대부업 등록. 변경. 폐업신고 및 지도. 감독
30. 대부업 영업정지. 등록 취소
31. 대부업자 등록수수료 징수
32. 대부업자 과태료 부과. 징수
33. 상표관리(부정경쟁 방지업무)
34. 방문. 통신판매업 등 신고 수리 및 지도. 감독
35. 품질표시 상품단속
36. 공산품 품질조사 및 품질경영 추진
37. 불량 공산품 단속
38. 불량 공산품 신고센터 운영
39. 으뜸장인상 제도 운영
40. 상정·소상공인 업무
41. 지식기반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시행
42. 테크노파크 조성 운영
43. 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기구 설치 운영
44. 나노산업 육성 및 관련기업 지원
45. 신소재. 나노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46. 신소재산업화지원센터 설치 운영
47. 산업디자인 개발사업
48. 생물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49. 생물산업 기술개발 및 기술인력 육성 지원 사업 추진
50. 생물산업 분야 산. 학. 연 기술협력 사업 추진
51. 생물지원연구센터 설립 등 생물산업 관련 기반조성 업무

52. 바이오산업 발굴 및 육성
53. 첨단과학연구단지의 조성지원 사업
54. 과학기술진흥 및 연구개발 업무의 종합 기획 조정
55. 과학기술정보교류, 홍보 및 학술활동 지원
56. 과학기술 사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57. 대학내 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련 시설(연구소 및 센터)운영 지원
58. 지역특성화 기술개발 사업
59.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자문관 활용 사업 지원
60. 기업체 기술지도 종합기획 조정
61. 지역기술 혁신센터(TIC) 지원
62. 정보벤처산업 육성 전략 수립
63. 정보벤처관련 기획조정 및 통제
64. 정보벤처산업 육성 및 지원체제 정비
65. 정보벤처기업 활성화 대책 협의
66. 정보벤처산업 관련 주요 시책개발 및 국비 확보
67. 벤처 정보마인드 확산을 위한 시민교육
68. 벤처지원센터 운영
69. 그밖에 정보벤처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70. 지역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추진
71.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운영 관리
72. 문화산업지원센터 운영 관리
73. 문화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
74. 상공회의소 지원 업무
75. 국가산업단지 및 입주업체 지원
76. 국가산단 투자환경개선 추진
77. 지방산업단지 관리업무 지원
78. 삼진산업단지 분양 및 지도, 감독
79. 산정농공단지 분양 및 지도, 감독
80. 농공 및 산업단지 시설물 관리 및

유지 관리, 입주계약(변경)

81. 농공 및 산업단지 공장설립 완료 신고
82. 농공 및 산업단지 임대신고 및 분양 신고
83. 산업자원동원 충무계획수립 시행
84. 대불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지원
85. 보세지역 지정에 관한 업무
86. 지역 연구센터(RIC) 사업 육성
87. 노동조합 설립신고 변경. 해산 신고
88. 노동조합 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89. 노동조합 규약 및 결의처분 시정명령
90.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 및 공고
91. 노동조합 과태료 부과. 징수
92.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신고수리, 중지명령
93. 노동조합 단체협약체결 신고수리 및 시정명령
94. 노동조합 노동관계의 지원
95. 직장폐쇄의 신고. 수리
96. 광업권(조광권) 관리
97. 광산 보안 및 재해대책
98. 목포시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 및 운영
99. 유망 중소기업 육성. 지도
100. 다른 기관 중소기업 자금 지원
101. 중소기업제품 홍보. 판매. 참가 지원
102. 지방중소기업 육성 종합기획 조정
103. 기업애로사항 지도 및 해결. 산업 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
104. 제조업체 현황조사 및 관리
105. 공장등록증 민원 발급
106. 공장설립 등록 및 사후관리(폐업, 변경 등)
107. 공장의 소유자에 대한 보고. 검사 등
108. 시 경계 부근 공업단지 조성

- 109. 조선 관련 산업 지원 및 육성
- 110. 노동자 참여 세미나, 선진지 견학, 교육 등 지원 및 운영
- 111. 외국인 근로자 관련 각종 상담 등 외국인 콜센터 운영
- 112.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추진
- 113. 창업사업계획 승인 협의
- 114. 창업예비학교 운영
- 115. 창업보육센터 설치운영
- 116. 신산업 동향 파악 및 신산업 발굴 육성
- 117. 미래전략산업 업무 종합 기획·조정
- 118. 4차 산업혁명 대응 업무 조정·지원
- 119.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시책 발굴 지원
- 120. 4차 산업혁명 관련 동향 및 정보 파악·전파
- 121.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및 공약사업 추진
- 122.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추진
- 123.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추진
- 124. 신재생에너지 공동 특화사업 발굴 추진
- 125. 국제통상진흥시책 개발연구 및 종합기획 조정
- 12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ITA) 지원 업무
- 127.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 128. 수출진흥 계획 수립 추진(공산품, 가공식품, 농수산물)
- 129. 수출업체 육성. 지원 및 유망수출 제품의 해외 홍보
- 130. 수출입 계획. 실적 총괄
- 131. 수출입 정보 및 자료 관리
- 132. 수출종합상담실 운영
- 133. 바이어 초청. 안내. 지원
- 134. 국제교류 협력증진 시책 연구

- 135. 국제자치단체간 자매결연 및 친선
우호협력 업무
- 136. 외국 민간단체와의 교류협력 업무
- 137. 외국 자치단체간 교류 인사영접
및 안내
- 138. 외국어 통역. 번역 지원
- 139.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방안 연구
- 140. 국제 카페리선 취항지원 업무
- 141. 산업통상자원부소관 업무 중 다른 실과에
분장되지 아니한 사항
- 142. 지방해양수산청(항만관련부서 소관
제외) 업무 협의
- 143. 공예품 개발 및 지원
- 144. 투자유치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
시행 · 조정
- 145. 투자유치 지원제도 · 시책 및 인센
티브 개발
- 146. 투자 유치 및 투자자에 대한 정보관리
· 자료제공 등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 147. 투자유치기업 재정지원제도 운영
- 148.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운영
- 149. 투자유치자문관 운영 · 지원
- 150. 국내 잠재투자가 발굴 및 DB구축
- 151. 출향기업 등 국내기업 정보 수집
및 관리
- 152. 투자유치 프로젝트개발 및 타당성 분석
- 153. 투자유치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 154. 잠재투자가 초청 투자설명회 개최
- 155. 유치기업 행정지원 및 고충사항 처리
- 156. 투자유치 원스톱(ONE-STOP)서비스
지원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 157. 국내 · 외 기업 투자유치 추진
- 158.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관련업무 총괄

- 159. 민간 투자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업무
- 160. 민간기업 외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 161. 외자유치 업무
- 162.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관 운영. 지원
- 163. 외국인 투자가 정보수집 및 관리
- 164. 외국인 투자기업 고충 처리반 운영
- 165.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업무
- 166. 외국인 투자기업 사후관리
- 167. 외국인 투자지원(FOLLOW-UP) 관리에
관한 사항
- 168. 해외투자유치 전략 및 세부실행계획 수립
- 169. 해외투자 시장 분석
- 170. 해외투자자 초청 상담
- 171.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해외박람회 참가
- 172. 해외투자 발굴 및 투자유치단 파견
- 173. 외자투자·유치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
- 174. 투자유치 전반에 관한 사항
- 175. 산업단지 입주계약 심사 및 체결
- 176.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추진
- 177. 연료수급의 종합계획 수립
- 178.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 관리
- 179. 전기설비 사후관리
- 180. 전기용품 제조업 등록 및 사후관리
- 181. 불법·불량 전기용품 단속
- 182. 전기안전관리 대행업 등록 및
사후관리
- 183. 발전사업 허가 및 수급계약 인가
- 184. 유류수급 조정
- 185. 석유류판매업 등록 및 지도. 감독
- 186. 석유류 품질관리
- 187. 석탄 및 연탄수급 조정

188. 석탄가공업 허가 및 지도. 감독
189. 연탄품질 관리
190. 에너지관리 소비절약 추진
191. 에너지관리 지정업체 지도. 감독
192. 열사용 기자재 제조업체 지도. 감독
193. 열관리 시공협회 위탁업무 지도. 감독
194. 가스안전관리 계획 수립
195.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판매, 저장, 제조업, 충전)업소 지도 감독
196.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판매, 저장, 제조업, 충전) 허가 및 변경 허가
197.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및 지도. 감독
198. 도시가스시설 공사계획 승인 및 신고
199. 특정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사용 신고 및 사용시설 사후 관리
200. 가스시설 시공자 지도. 감독
201. 도시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 지도. 감독
202. 녹색에너지연구원 설립. 운영. 지도. 감독
203. 에너지밸리 관련 업무 추진

<신 설>

<신 설>

제19조2(일자리청년정책과) 일자리청년 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
2. 목포시 일자리 총괄 관리
3. 취업정보센터운영 및 취업알선
4. 일자리창출 우수시군에 대한 업무
5.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업무
6. 고용위기지역 지원에 관한 업무
7. 일자리안정자금에 관한 업무
8. 협동조합기본법 추진에 관한 사항
9. 일자리지원에 관한 사항
10.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11. 공공근로사업 추진

12. 취업정보센터 운영 및 취업알선
13.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시행
14. 기능경기대회 지원
15. 사회적 기업에 관한 사항
16. 공공직업훈련원 지원 및 협조
17. 고용촉진훈련 업무 전반 (계획수립, 지원, 훈련기관 지도, 감독)
18. 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지도, 감독
19. 무허가 직업안내 행위 등 지도, 단속
20.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1. 재정지원사업(지역공동체, 공공근로)에 관한 업무
22.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23.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에 관한 업무
24. 산학연 연관 사업에 관한 업무
25. 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업무
26. 전남 청년 마을로, 내일로 프로젝트 추진
27. 전남 동행 일자리사업 추진
28. 전남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
29. 4050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30.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31. 청년일자리 창출 및 자립기반 구축 지원
32. 청년 인력 양성 및 지원
33. 청년 관련 단체 지원 및 관리
34. 청년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35. 청년취업 및 창업·창직 지원
36. 청년일자리 신규시책 발굴 및 사업화 추진
37. 청년취업아카데미 및 취업컨설팅 지원

제21조(농업산업과) 농업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 략)
9. 대규모 점포 등록, 지도관리

제21조(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
-----.

1. ~ 8. (현행과 같음)
- <삭 제>

10. 전남서남부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운영 지도. 감독

11. ~ 154. (생략)

155. 담배소매인의 지정 및 지도. 감독

156. 담배도매업 등록, 휴. 폐업 신고 접수

157. 담배도매업의 지도 감독 및 행정처분

158. 전자상거래 업무 추진

159. 상거래질서 확립(가격표시제)

160. 미터법 통일 지도

161. 계량기수리검정 검사및 부정계량기 단속

162. 계량기 수리업소 지도. 감독

163. 물가종합대책 수립 및 조정 총괄

164. 물가동향의 종합분석 및 조정

165.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166. 공공요금, 관인요금의 관리

167. 소비자 고발처리 및 보호대책 수립

168. 새마을금고의 합병 또는 분할의 승인

169. 지역경제분야 금융지원 업무 및 금융통화 자료 관리

17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계획

17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징수

172. 「복권 및 복권기금법」 홍보 및 계도

173. 복권위원회 업무협조. 지원

174. 대부업 등록. 변경. 폐업신고 및 지도. 감독

175. 대부업 영업정지. 등록 취소

176. 대부업자 등록수수료 징수

177. 대부업자 과태료 부과. 징수

178. 상표관리(부정경쟁 방지업무)

179. 방문. 통신판매업 등 신고 수리 및 지도. 감독

<삭제>

11. ~ 154. (현행과 같음)

<삭제>

180. 품질표시 상품단속

181. 공산품 품질조사 및 품질경영 추진

182. 불량 공산품 단속

183. 불량 공산품 신고센터 운영

184. 으뜸장인상 제도 운영

185. 상정·소상공인 업무

186. (생 략)

제22조(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2. 환경영향평가, 환경성 검토, 환경분쟁 조정

3. 환경오염 특별대책 지역내의 토지 이용 시설 제한

4.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5. 자연보호 종합계획 수립 시행

6. 자연정화 활동의 주관 및 지도

7. 자연보존물, 자연보호 시설물 지정, 조성 및 관리

8. 자연보호조직의 육성, 관리

9. 자연보호 계도 단속 및 홍보 활동 전개

10. 자연발생 유원지 종합관리 대책 추진

11. 자연정화 및 중역권 수질보존 업무

12. 야생조수보호 업무

13. 민간 환경단체 관리, 지원, 협의 업무

14. 기타 자연보호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15. 수변구역 관리

16. 과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업무

17. 환경백서 발간

18. 지방의제 21 추진에 관한 사항

19. 수렵면허 등에 관한 업무

20. 조수, 포획 승인 등에 관한 업무

21. 환경보전대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22. 특정수질유해물질의 관리

186. (현행과 같음)

<삭 제>

23. 「영산강, 섬진강 수계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행
24. 영산호, 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 오염원 관리
25.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추진
26. 공중화장실 설치, 개보수 및 지도, 점검 등 관리 총괄(유달공원, 외달도, 고하도 공중화장실 제외)
27.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28.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 등록 및 행정처분
29.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30.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변경)신고 및 지도, 감독
31.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32.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신고) 및 행정처분
33. 분뇨 등 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 대행관리
34. 토양환경보존에 관한 사무
35. 토양측정망 운영관리
36. 특정 토양오염 유발시설 신고 및 행정처분
37. 사업장별 오염부하량 할당 및 관리
38. 배출시설의 설치, 변경 신고 허가
39.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특정 공사 사전신고
40.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41. 환경소음 측정망 운영관리
42. 소음, 진동규제 지역 지정, 규제기준 설정 및 통제

43. 수질. 대기. 소음. 진동 악취 배출
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44. 기타 수질오염원 지도 단속에 관한업무
45.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
46.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행정처분
47. 운행차 확인 검사대행자 등록 및 관리
48. 특정공사 사업장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49. 수질(하천, 호수) 오염행위 지도.
단속 및 오염사고 처리
50. 농경지 오염방지 및 (기름)오염농
수산물 폐기
51. 지정 폐기물 운반통제 및 수질오염
물질의 제거명령
52.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점검 및 행정처분
53.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사항
54.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55.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56.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 및 지도 감독
57.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 및 지도 감독
58. 가축분뇨 관련 영업허가(신고) 및
행정처분
59. 오염총량관리 시행 계획 수립. 시행
60. 전국오염원 조사에 관한 업무
6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관리
62.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63. 삭제
64.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대상기
기 신고 및 지도. 점검
65. 대기오염측정망 관리
66. 저탄소 녹색성장 총괄

67.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관리 및 지원
68.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69.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제23조(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행정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2. 청소장비 운영계획 및 관리
 3. 환경미화원 임면 및 지도, 감독
 4. 환경미화원 노조 관련 업무 추진
 5. 시가지 청소상태 점검 및 취약지 중점관리
 6. 위반쓰레기 배출 및 무단투기 지도 단속
 7. 쓰레기종량제 종합계획 수립 시행
 8. 쓰레기종량제 위반자 청문 및 과태료 부과
 9.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공급 판매에 관한 사항
 10. 폐기물 매립 및 소각시설계획 수립 및 관리
 11.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시행
 12. 폐기물 다량 배출자 신고처리 및 지도, 점검
 13.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지도단속, 행정처분
 14. 폐기물 처리업 허가
 15. 폐기물 통계 조사
 16. 폐기물 재활용업소 신고 및 지도 점검
 17. 폐기물 보관용기(롤온박스 등) 보급 및 관리
 18. 대형폐기물 분리수거에 관한 사항
 19.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20.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삭 제>

21. 건설폐기물 신고
22. 사업장 폐기물(지정폐기물제외) 처리에 관한 사항
23. 사업장 폐기물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24. 사업장 폐기물 관련 생활민원 처리
25.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실적보고
26. 지정폐기물 배출자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27. 지정폐기물에 관한 업무
28. 감염성 폐기물에 관한 업무
29. 감염성 폐기물 배출자 지도 점검 및 처분
30.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등 감량화 추진
31. 음식물 공공처리 시설 설치
3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및 처분
33. 음식물류 폐기물수거 운반 수수료 부과 징수
34.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 업무
35. 비위생매립지 관리 및 정비사업
36. 위생 및 비위생매립지 사후 관리
37. 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38. 재활용 수집 등록단체 및 신고업소 지도. 관리(고물상)
39. 재활용품 수집
40.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41. 재활용품 판매. 세입관리
42. 재활용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보수 전반에 관한 사항
43. 재활용 가능 폐기물 선별. 압축 및 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44. 1회용품 감량화 추진

45. 나눔장터 운영 및 친환경상품 구매에 관한 사항

제25조(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은 다
음 사무를 분장한다.

1. ~ 54. (생 략)

<신 설>

제32조(하부조직) ① 보건위생과장은 지방
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
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
사무관**으로, 하당보건지소장은 지방
의무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
으로 한다.

② 보건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1. ~ 48. (생 략)

<신 설>

③ (생 략)

④ 하당보건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1. ~ 21. (생 략)

<신 설>

제4장 사업소

제1절 교육문화사업단

제33조(단장의 직급) 단장은 지방서기관
으로 보한다.

제34조(하부조직) ① 교육체육과장·문화
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문예

제25조(도시계획과) -----

1. ~ 54. (현행과 같음)

55. 스마트시티 관련 업무

제32조(하부조직) ① -----

----- **지방간호사무관**으로-----

-----.

② -----.

1. ~ 48. (현행과 같음)

**49. 목포시 의료원 재정지원 및 예산·
결산·관리 업무 지도·감독**

③ (현행과 같음)

④ -----.

1. ~ 21. (현행과 같음)

22.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 사업소

제1절 환경관리사업단

제33조(단장의 직급) (현행과 같음)

<삭 제>

시설관리과장·체육시설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목포자연사박물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교육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중·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분야 지원 및 시책발굴에 관한 사항
2. 초·중·고 우수학생 표창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초·중·고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4.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교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목포장학재단 지도감독 및 인재육성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7.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평생학습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사항
9. 평생교육 발전계획 수립 및 학습 진흥에 관한 사항
10.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11.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사항
12.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14. 평생학습 정보 제공 및 학습 상담에 관한 사항
15. 평생학습 축제 개최에 관한 사항
16. 평생학습 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7. 평생교육 강사풀제 운영에 관한 사항
18.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9. 목포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20. 목포시 평생학습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1. 평생교육 기관, 동 주민사랑방 프로
그램 운영·지원
22. 동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3. 동 주민사랑방 강사, 자원봉사 요원 지원
24. 동 주민사랑방 물품관리 일반사항
25. 동 주민사랑방 운영실적 평가 분석
26. 동 주민사랑방 운영비 등 경상예산 지원
27. 동 주민사랑방 거주외국인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8.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9. 서남권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
30. 성인 문해 교육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1.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32. 거주외국인에 대한 사회적응(한글
및 한국어) 교육 지원
33. 삭제
34. 삭제
35. 삭제
36. 체육진흥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37. 재단법인 체육진흥회업무에 관한 사항
38.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39.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및 지도·육성
40. 생활체육 동호인 지도·육성
41. 각종 생활체육 동호인대회 지원
및 운영·관리
42. 체육회 관련 업무지도
43. 각종 체육행사주관 및 지도·관리

44.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 시설 설치
4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업의 등록신고 등 지도·감독
46. 체육회소속 경기단체 주관 자전거 대회 지원 업무
47. 직장체육활동의 지원
48. 직장 체육팀의 지도·육성
49. 직장운동부 운영관리 (하키팀, 육상팀, 축구팀)
50.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51.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52. 스포츠 이벤트 개최
53. 스포츠 마케팅 및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54. 스포츠관광 홈페이지 구축
55. 스포츠관광 프로그램 발굴
56. 청소년 스포츠클럽 지도·감독
57. 목포축구센터 지도·감독
58. 거주외국인 각종 체육행사 초청 및 참여 지원
59. 기타 체육업무에 관한 사항
- ③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종합 기획 조정
 2. 문화·예술행사 운영(시립예술단체 행사 제외)
 3.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지도 육성
 4. 문예진흥기금 운영·관리
 5.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6.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금의 조성

· 관리 및 운용

7.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8. 예술촌 조성 및 운영
9. 평화광장 야외무대 유지 관리
10. 문화의 집 조성 및 운영·관리
11. 목포문화재단 운영
12. 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13. 작은 어린이도서관 운영 관리
14.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관리
15. 건축물 미술장식품 설치·심의
16. 야외놀이마당 유지관리
17.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18. 유형문화재 보존관리
19. 무형문화재 보전전승 관리
20. 무형문화재 지정신청
21.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위탁관리
22. 매장문화재 발굴계획
23. 문화재 매매업소 지도감독
24.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계획
25. 국가문화재 현상변경 승인
26. 목포근대역사관(동척) 운영·관리
27. 목포 만호진 역사공원화 조성사업
종합계획
28. 목포시 문화유산위원회 운영
29. 목포시사 편찬에 관한 사항
30. 기타 일반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항
31. 그 밖에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32. 출판사 및 인쇄소 신고, 변경신고 및 관리
33. 공연장 등록·변경·폐업처리·
승계사항 처리
34. 공연장 지도·감독
35. 영화상영 신고 수리
3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37. 지방문화원 육성 · 지원
38. 목포를 빛낸 명인선정 및 조형물 설치
39. 사회 · 문화 · 예술 · 교육 프로그램 운영
40. 거주외국인 각종 문화예술행사 초청 및 참여
41. 거주외국인 지역유적지 답사, 문화 체험, 각국 기념일 행사 지원
42. 노적봉 예술공원 운영 · 관리
43. 전시작품 구입 및 수집에 관한 사항
44. 공연작품 기획, 제작, 공연에 관한 사항
45.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유치, 조성
46. 황해교류역사관 업무 전반
- ④ 삭제
- ⑤ 문예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방호 · 방화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2. 입장권(열람권) 등의 발급 · 검인 · 검표, 시설물 사용료 징수 등
 3. 재산관리 · 시설물 종합관리 및 개 보수 등 영선에 관한 사항
 4. 조경 및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5. 냉난방, 통신, 전기, 기계, 음향, 소방 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관리
 6. 문화예술전시 · 공연행사 홍보 및 기록유지
 7. 공연계획 및 공연장 대관 사용에 관한 사항
 8. 공연물 제작 · 홍보 및 공연물품 수 급에 관한 사항
 9. 관람객 안내 및 안전관리
 10. 공연장, 연습실, 분장실관리
 11. 전시계획 및 전시실 대관 사용에

관한 사항

12. 삭제

13. 소장품 관리 및 미술활동의 홍보
· 보급에 관한 사항

14. 전시 소품, 공연 소품 유지관리

15. 기타 무대운영 및 문화예술회관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16. 시민문화체육센터(공연장, 일반음식점)
운영에 관한 사항

17. 목포문학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⑥ 체육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 회계,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 청사 방호·방화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체육시설의 입장료, 관람료, 사용료 관리
5. 체육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6. 체육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7. 체육시설 운영관리
8. 궁도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9. 부주산 체육시설물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10. 각종 기계장비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⑦ 목포자연사박물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 및 입장권 매·검표 관리
2. 재산관리·청사 시설유지 관리 및
방화·방호에 관한 사항
3. 전시시설 임대에 관한 사항
4. 관람객 안내 및 안전관리
5. 박물관 정보시스템(전산·영상·홈
페이지)운영 관리

6. 박물관에 관한 백서, 간행물의 제작 및 대외홍보 사항
7.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강연회, 연구회 등 개최
8. 박물관 특별전시 및 기획전시 계획 수립 및 시행
9. 박물관 잔디공원, 비파원 및 주차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0. 박물관의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기타 박물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12. 소장품의 조사·연구 및 수집, 기증, 기탁에 관한 사항
13. 소장품 관리·전시 및 전산화 등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14. 소장품 훈증 및 소독, 복원에 관한 사항
15. 소장품 보존 환경조사 연구 및 지원 사항
16. 자연사에 속하는 지질, 동·식물, 곤충, 해양생물, 조·포유류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17. 자연사 및 향토사 조사 연구에 관한 학술단체 또는 민간인과의 협력 및 지원
18. 향토문화자료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19. 학술조사 연구 및 연구결과의 보급, 선양에 관한 사항
20.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전시품 관리
21.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수장고 소장 유물 관리
22.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전시회 개최
23. 목포생활도자박물관 활성화계획 수립·추진
24.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전시품 수집 및 연구
25. 도자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6. 체험공방 프로그램 운영

- 27.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전시품 관리
- 28.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수장고 소장품 관리
- 29.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정보시스템
(전산·영상·홈페이지) 운영 관리
- 30.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전시회 개최
- 31.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활성화계획
수립·추진
- 32. 그 밖의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제34조2(하부조직) ① 환경보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시설관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환경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2. 환경영향평가, 환경성 검토, 환경분쟁 조정
3. 환경오염 특별대책 지역내의 토지
이용 시설 제한
4.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5. 자연보호 종합계획 수립 시행
6. 자연정화 활동의 주관 및 지도
7. 자연보존물, 자연보호 시설물 지정,
조성 및 관리
8. 자연보호조직의 육성, 관리
9. 자연보호 계도 단속 및 홍보 활동 전개
10. 자연발생 유원지 종합관리 대책 추진
11. 자연정화 및 중역권 수질보존 업무
12. 야생조수보호 업무
13. 민간 환경단체 관리, 지원, 협의 업무

14. 기타 자연보호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15. 수변구역 관리
16. 과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업무
17. 환경백서 발간
18. 지방의제 21 추진에 관한 사항
19. 수렵면허 등에 관한 업무
20. 조수, 포획 승인 등에 관한 업무
21. 환경보전대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22. 특정수질유해물질의 관리
23. 「영산강, 섬진강 수계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행
24. 영산호, 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 오염원 관리
25.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추진
26. 공중화장실 설치, 개보수 및 지도, 점검 등 관리 총괄(유달공원, 외달도, 고하도 공중화장실 제외)
27.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28.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 등록 및 행정처분
29.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30.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변경)신고 및 지도, 감독
31.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32.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신고) 및 행정처분
33. 분뇨 등 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 대행관리
34. 토양환경보존에 관한 사무
35. 토양측정망 운영관리
36. 특정 토양오염 유발시설 신고 및 행정처분

37. 사업장별 오염부하량 할당 및 관리
38. 배출시설의 설치, 변경 신고 허가
39.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특정
공사 사전신고
40.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41. 환경소음 측정망 운영관리
42. 소음, 진동규제 지역 지정, 규제기준
설정 및 통제
43. 수질, 대기, 소음, 진동 악취 배출
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44. 기타 수질오염원 지도 단속에 관한업무
45.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
46.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행정처분
47. 운행차 확인 검사대행자 등록 및 관리
48. 특정공사사업장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49. 수질(하천, 호수) 오염행위 지도,
단속 및 오염사고 처리
50. 농경지 오염방지 및 (기름)오염농
수산물 폐기
51. 지정 폐기물 운반통제 및 수질오염
물질의 제거명령
52.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점검 및 행정처분
53.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사항
54.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55.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56.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 및 지도 감독
57.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 및 지도 감독
58. 가축분뇨 관련 영업허가(신고) 및
행정처분
59. 오염총량관리 시행 계획 수립, 시행

<신 설>

60. 전국오염원 조사에 관한 업무
 6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관리
 62.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6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 신고 및 지도, 점검
 64. 친환경상품 구매에 관한 사항
 65. 대기오염측정망 관리
 66. 저탄소 녹색성장 총괄
 67.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관리 및 지원
 68.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69.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③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조정
 2. 청소장비 운영계획 및 관리
 3. 환경미화원 임면 및 지도, 감독
 4. 환경미화원 노조 관련 업무 추진
 5. 시가지 청소상태 점검 및 취약지 중점관리
 6. 위반쓰레기 배출 및 무단투기 지도, 단속
 7. 쓰레기종량제 종합계획 수립 시행
 8. 쓰레기종량제 위반자 청문 및 과태료 부과
 9.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공급 판매에 관한 사항
 10. 폐기물 매립 및 소각시설계획 수립 및 관리
 11.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시행
 12. 폐기물 다량 배출자 신고처리 및 지도, 점검
 13.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지도단속, 행정처분
 14. 폐기물 처리업 허가
 15. 폐기물 통계 조사

16. 폐기물 재활용업소 신고 및 지도 점검
17. 폐기물 보관용기(롤온박스 등) 보급 및 관리
18. 대형폐기물 분리수거에 관한 사항
19.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20.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21. 건설폐기물 신고
22. 사업장 폐기물(지정폐기물제외) 처리에 관한 사항
23. 사업장 폐기물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24. 사업장 폐기물 관련 생활민원 처리
25.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실적보고
26. 지정폐기물 배출자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27. 지정폐기물에 관한 업무
28. 감염성 폐기물에 관한 업무
29. 감염성 폐기물 배출자 지도 점검 및 처분
30.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등 감량화 추진
31. 음식물 공공처리 시설 설치
3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및 처분
33. 음식물류 폐기물수거 운반 수수료 부과 징수
34.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 업무
35. 비위생매립지 관리 및 정비사업
36. 위생 및 비위생매립지 사후 관리
37. 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38. 재활용 수집 등록단체 및 신고업소 지도. 관리(고물상)
39. 재활용품 수집
40.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영에

<신 설>

관한 사항

41. 재활용품 판매. 세입관리
42. 재활용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보수 전반에 관한 사항

43. 재활용 가능 폐기물 선별. 압축 및 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44. 1회용품 감량화 추진
45. 나눔장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④ 환경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 회계,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 반입폐기물의 계량 및 통계
3. 반입폐기물 수수료의 과징
4. 반입폐기물의 위생적 매립처리
5. 주변마을 주민 환경위생사업
6.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건강진단
7. 매립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8. 매립장에서 발생된 가스의 성분조사 및 처리
9. 매립장 및 주변마을 방역소독
10. 매립장내에 발생된 악취제거에 관한 사항
11. 매립용중장비 및 차량관리
12. 침출오수의 적정처리 및 우수배제에 관한 사항
13. 침출수 및 지하수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14. 폐기물 매립 후 사후관리
15. 가압장 관리
16.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자원화시설 운영
17. 각종 부대시설 관리 유지
18. 기타 처리시설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19. 환경에너지센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0.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제36조(하부조직) ① **상하수도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수도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수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남해환경관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북항환경관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상하수도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하수도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상하수도사업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
3. 상하수도사업회계 현금출납 및 금고감독
4. 상하수도사업회계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 보관
5. 상하수도사업회계 일시차입, 채무 부담행위, 지방채관리
6. 상하수도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 구매, 기타의 계약
7. 상하수도사업 회계 결산, 경영평가 관리
8. 상하수도사업 회계 공인관수 및 문서 관리
9. 상하수도 공기업회계 행정재산 유지관리
10. 상하수도사업 시설용지 취득 및 처분과 용지보상
11. 상하수도재산 임대료 부과 및 징수
12. 상하수도사업 회계 자재수불 및 보관 유지 관리
13. 상하수도사업용 차량관리
14. 상하수도사업 회계 은닉재산 색출

제36조(하부조직) ① **수도과장**-----

----- **남해수질관리과장**-----

----- **북항수질관리**

과장-----

-----.

<삭 제>

및 소유권확보

15. 상하수도사업 회계 세입금 관리
16.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17. 상하수도 사용료 이의신청 처리
18. 상하수도요금 인상 및 조정 관리
19. 시외급수의 검침과 사용료 과징
20. 부정수도 사용자 및 시설 신고(수도
계량기 검침원)
21. 급수공사 시공명령
22. 급수전 명의변경
23. 수도계량기 시험의뢰 신청 접수
24. 다량 수도사용수용가 관리
25. 물이용 부담금에 관한 사항
26. 지하수 이용 부담금에 관한 사항
27. 지하수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8. 재산의 대부,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29. 재산의 시가조사 및 가격 평가에
관한 사항
30. 하천, 하수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점·사용료 부과 징수
31. 하수도 배출량 조사
32.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③ 수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0. (생략)

<신설>

③ -----.

1. ~ 60. (현행과 같음)

61. 상수도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62. 상수도사업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
63. 상수도사업회계 현금출납 및 금고감독
64. 상수도사업회계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 보관
65. 상수도사업회계 일시차입, 채무부담
행위, 지방채관리
66. 상수도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 구매,

기타의 계약

67. 상수도사업 회계 결산, 경영평가 관리
68. 상수도사업 회계 공인관수 및 문서 관리
69. 상수도 공기업회계 행정재산 유지관리
70. 상수도사업 시설용지 취득 및 처분과 용지보상
71. 상수도재산 임대료 부과 및 징수
72. 상수도사업 회계 자재수불 및 보관 유지 관리
73. 상수도사업용 차량관리
74. 상수도사업 회계 은닉재산 색출 및 소유권확보
75. 상수도사업 회계 세입금 관리
76.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77. 상수도 사용료 이의신청 처리
78. 상수도요금 인상 및 조정 관리
79. 시외급수의 검침과 사용료 과징
80. 부정수도 사용자 및 시설 신고(수도 계량기 검침원)
81. 급수공사 시공명령
82. 급수전 명의변경
83. 수도계량기 시험의뢰 신청 접수
84. 다량 수도사용수용가 관리
85. 물이용 부담금에 관한 사항
86. 재산의 대부,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87. 재산의 시가조사 및 가격 평가에 관한 사항

④ 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6. (생략)

<신설>

④ -----.

1. ~ 26. (현행과 같음)

27. 하수도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8. 하수도사업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
29. 하수도사업회계 현금출납 및 금고감독
30. 하수도사업회계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 보관

31. 하수도사업회계 일시차입, 채무부담 행위, 지방채관리
32. 하수도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 구매, 기타의 계약
33. 하수도사업 회계 결산, 경영평가 관리
34. 하수도사업 회계 공인관수 및 문서 관리
35. 하수도 공기업회계 행정재산 유지관리
36. 하수도사업 시설용지 취득 및 처분과 용지보상
37. 하수도재산 임대료 부과 및 징수
38. 하수도사업 회계 자재수불 및 보관 유지 관리
39. 하수도사업용 차량관리
40. 하수도사업 회계 은닉재산 색출 및 소유권확보
41. 하수도사업 회계 세입금 관리
42.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43. 하수도 사용료 이의신청 처리
44. 하수도요금 인상 및 조정 관리
45. 재산의 대부,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46. 재산의 시가조사 및 가격 평가에 관한 사항
47. 하천, 하수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점·사용료 부과 징수
48. 하수도 배출량 조사
49.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⑤ 남해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7. (생 략)

⑥ 북항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남해수질관리과장-----.

1. ~ 17. (현행과 같음)

⑥ 북항수질관리과장-----.

1. ~ 21. (생 략)

제38조 (하부조직) ① 도시재생과장. **도시 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 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농촌 지도관으로 보한다.

② 도시재생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 한다.

1. 원도심 개발관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계획 수립 및 유치활동에 관한 사항
2. 원도심 개발관련 국책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원도심 활성화 종합대책 추진
4. 원도심지역 특화의 거리 조성
5. 원도심 도시계획사업 관련 보상업무 추진
6. 원도심 입점업체 임대료 지원
7. 원도심 특화거리 내 건물수선비 지원
8. 원도심 상가 활성화 현안사업 추진
9. 원도심 내 도심상가 주차장 조성
10. 원도심권 기반시설 조성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현안사업 추진
11. 주거환경 개선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12.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 소방도로 개설 등 각종 사업 추진
13. 삼학도복원화 사업
14. 삼학도 해양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추진
15. 원도심 재개발 종합계획 수립 시행
16. 원도심 재개발 관련 민간자본 유

1. ~ 21. (현행과 같음)

제38조 (하부조직) ① 도시재생과장. **도시문화재과장**-----

-----.

② -----.

<삭 제>

- 치계획 수립 및 유치활동에 관한사항
17. 원도심 재개발 및 뉴타운조성, 도시계획사업 관련 보상업무 추진
 18. 구) 중앙공설시장 재건축 등에 관한 사항
 19. 구) 가톨릭병원 성지조성 사업
 20. 구) 가톨릭병원 성지조성 사업관련 기반시설 사업 추진
 21. 서남권 수산물유통센터 재건축(광동상가) 및 진입도로 확장 공사
 22. 대성지구 공공주택개발 사업
 23. 서산·온금지구 재개발사업 사업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
 24. 서산·온금지구 재개발사업 관련 기반시설사업 추진
 25. 도심관통도로(7호광장 ~ 구)중앙공설시장간) 개설
 26. 청호대교 건설에 관한 사항
 27.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신 설>

28. 목포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에 관한사항
29.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한 사항
30.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
31.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처연계사업 추진
32.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한 사항
33.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
34.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처연계사업 추진
35. 목포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③ 도시개발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 43. (생 략)

44. 산업단지 조성(공사부분) 및 대지 조성사업

45. ~ 52. (생 략)

53. 산단 기업유치 기반시설 지원

<신 설>

관한 사항

36.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

37.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38. 도시재생 역량강화 사업 추진 및 관리

40. 도시재생사업 문화콘텐츠 개발 관련 업무 추진

41. 도시재생 선도지역 시설물 유지관리

42. 도시재생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지원 추진

43. 도시재생 기금 용자 관련 업무 추진

44. 도시재생 뉴딜사업 프로젝트팀 지원

45.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관리

46. 도시재생 사회적경제기업(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원관리

47. 도시재생위원회 및 도시재생 전략회의 등 각종 위원회 관리

48. 도시재생사업 예산 및 지출 관련 업무

49. 그밖에 도시재생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50. 지역밀착형 생활SOC 관련 업무

③ 도시문화재과장-----.

1. ~ 43. (현행과 같음)

<삭 제>

45. ~ 52. (현행과 같음)

<삭 제>

54. 원도심 개발관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계획 수립 및 유치활동에 관한 사항

55. 원도심 개발관련 국책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6. 원도심 활성화 종합대책 추진

57. 원도심지역 특화의 거리 조성
58. 도시개발사업 관련 보상업무 추진
59. 원도심 입점업체 임대료 지원
60. 원도심 특화거리 내 건물수선비 지원
61. 원도심 상가 활성화 현안사업 추진
62. 원도심권 기반시설 조성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현안사업 추진
63. 주거환경 개선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64.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 소방도로
개설 등 각종 사업 추진
65. 삼학도복원화 사업
66. 삼학도 해양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추진
67. 원도심 재개발 종합계획 수립 시행
68. 원도심 재개발 관련 민간자본 유치
계획 수립 및 유치활동에 관한사항
69. 원도심 재개발 및 뉴타운조성, 도시
개발사업 관련 보상업무 추진
70. 행정타운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
71. 구) 가톨릭병원 성지조성 현황 관리
72. 서남권 수산물유통센터 재건축(광동
상가) 및 진입도로 확장 공사
73. 서산·온금지구 재개발사업 사업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
74. 서산·온금지구 재개발사업 관련
기반시설사업 추진
75. 도심관통도로(7호광장 ~ 구)중앙
공설시장간) 개설
76. 만호지구 주거지 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77. 산정초등학교 뒤편 도로개설
78. 대성동 연산배수지 일원 도로개설
79. 2025 목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0.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④ 공원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4장 제4절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제39조(소장의 직급)

제40조(분장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 회계,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 반입폐기물의 계량 및 통계
3. 반입폐기물 수수료의 과징
4. 반입폐기물의 위생적 매립처리
5. 주변마을 주민 환경위생사업
6.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건강진단
7. 매립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8. 매립장에서 발생된 가스의 성분조사 및 처리
9. 매립장 및 주변마을 방역소독
10. 매립장내에 발생된 악취제거에 관한 사항
11. 매립용증장비 및 차량관리

81. 유형문화재 보존관리
82. 무형문화재 보전전승 관리
83. 무형문화재 지정신청
84.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위탁관리
85. 매장문화재 발굴계획
86. 문화재 매매업소 지도감독
87.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계획
88. 국가문화재 현상변경 승인
89. 목포근대역사관(동척) 운영·관리
90. 목포 만호진 역사공원화 조성사업
종합계획
91. 목포시 문화유산위원회 운영
92. 목포시사 편찬에 관한 사항
93. 기타 일반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항
94. 황해교류역사관 업무 전반
95.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96. 문화재청 문화재관련사업

④ -----.

<삭 제>

<삭 제>

<삭 제>

12. 침출오수의 적정처리 및 우수배제에 관한 사항
13. 침출수 및 지하수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14. 폐기물 매립 후 사후관리
15. 가압장 관리
16.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자원화시설 운영
17. 삭제
18. 삭제
19. 삭제
20. 각종 부대시설 관리 유지
21. 기타 처리시설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22. 환경에너지센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3.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제4장 제4절1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제39조1(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0조1(분장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방호·방화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2. 입장권(열람권) 등의 발급·검인·검표, 시설물 사용료 징수 등
3. 재산관리·시설물 종합관리 및 개보수 등 영선에 관한 사항
4. 조경 및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5. 냉난방, 통신, 전기, 기계, 음향, 소방 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관리
6. 문화예술전시·공연행사 홍보 및 기록유지
7. 공연계획 및 공연장 대관 사용에 관한 사항
8. 공연물 제작·홍보 및 공연물품 수급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2. (생 략)

<신 설>

9. 관람객 안내 및 안전관리
10. 공연장, 연습실, 분장실관리
11. 전시계획 및 전시실 대관 사용에 관한 사항
12. 소장품 관리 및 미술활동의 홍보·보급에 관한 사항
13. 전시 소품, 공연 소품 유지관리
14. 기타 무대운영 및 문화예술회관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15. 시민문화체육센터(공연장, 일반음식점) 운영에 관한 사항
16. 목포문화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장 제4절2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제39조2(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0조2(분장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 회계,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 청사 방호·방화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체육시설의 입장료, 관람료, 사용료 관리
5. 체육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6. 체육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7. 체육시설 운영관리
8. 궁도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9. 부주산 체육시설물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10. 각종 기계장비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4장 제4절3 목포자연사박물관

제39조3(관장의 직급) 관장은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신 설>

다.

제40조3(분장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 및 입장권 매·검표 관리
2. 재산관리·청사 시설유지 관리 및 방화·방호에 관한 사항
3. 전시시설 임대에 관한 사항
4. 관람객 안내 및 안전관리
5. 박물관 정보시스템(전산·영상·홈페이지) 운영 관리
6. 박물관에 관한 백서, 간행물의 제작 및 대외홍보 사항
7.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강연회, 연구회 등 개최
8. 박물관 특별전시 및 기획전시 계획 수립 및 시행
9. 박물관 잔디공원, 비파원 및 주차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0. 박물관의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기타 박물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12. 소장품의 조사·연구 및 수집, 기증, 기탁에 관한 사항
13. 소장품 관리·전시 및 전산화 등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14. 소장품 훈증 및 소독, 복원에 관한 사항
15. 소장품 보존 환경조사 연구 및 지원 사항
16. 자연사에 속하는 지질, 동·식물, 곤충, 해양생물, 조포류의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17. 자연사 및 향토사 조사 연구에 관한 학술단체 또는 민간인과의 협력 및 지원
18. 향토문화자료의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19. 학술조사 연구 및 연구결과의 보급, 선양에 관한 사항
20.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전시품 관리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수장고 소장 유물 관리 22.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전시회 개최 23. 목포생활도자박물관 활성화계획 수립·추진 24.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전시품 수집 및 연구 25. 도자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6. 체험공방 프로그램 운영 27.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전시품 관리 28.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수장고 소장품 관리 29.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정보시스템 (전산·영상·홈페이지) 운영 관리 30.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전시회 개최 31.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활성화계획 수립·추진 32. 그 밖의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

[별표 1]

현행						개정안					
동 장 의 직 급(제43조 관련)						동 장 의 직 급(제43조 관련)					
기관별	직위	직급	기관별	직위	직급	기관별	직위	직급	기관별	직위	직급
용당 1동 행정복지센터	용당1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죽교동 행정복지센터	죽교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용당 1동 행정복지센터	용당1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죽교동 행정복지센터	죽교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용당 2동 행정복지센터	용당2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북항동 행정복지센터	북항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용당 2동 행정복지센터	용당2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북항동 행정복지센터	북항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연동 행정복지센터	연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용해동 행정복지센터	용해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연동 행정복지센터	연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용해동 행정복지센터	용해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산정동 행정복지센터	산정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이로동 주민센터	이로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산정동 행정복지센터	산정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이로동 행정복지센터	이로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연산동 주민센터	연산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상동 행정복지센터	상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연산동 행정복지센터	연산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상동 행정복지센터	상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원산동 행정복지센터	원산동장	지방행정사무관	하당동 행정복지센터	하당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원산동 행정복지센터	원산동장	지방행정사무관	하당동 행정복지센터	하당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대성동 주민센터	대성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신흥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대성동 행정복지센터	대성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신흥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목원동 행정복지센터	목원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삼향동 주민센터	삼향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목원동 행정복지센터	목원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삼향동 행정복지센터	삼향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동명동 행정복지센터	동명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옥암동 주민센터	옥암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동명동 행정복지센터	동명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옥암동 행정복지센터	옥암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삼학동 주민센터	삼학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부흥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삼학동 행정복지센터	삼학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부흥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만호동 주민센터	만호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부주동 행정복지센터	부주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만호동 행정복지센터	만호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부주동 행정복지센터	부주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유달동 행정복지센터	유달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유달동 행정복지센터	유달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관 계 법 령 발 체 서

관 계 법 령	내 용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 등) ① 시 본청 국장의 직급과 본청의 실·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12.31, 2011.6.20>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사업단·소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하부 행정기관인 동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12.3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목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공고 제2018-1558호

입 법 예 고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우리시 공약사업 등 현안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장 정원확보, 직급별 불균형 해소, 정·현원 불부합 조정, 불합리한 복수직렬 조정 등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하여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

2. 주요내용

가.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조정내역

구 분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현 행	1,203	<u>551</u>	<u>22</u>	<u>69</u>	<u>311</u>	<u>250</u>
개 정	1,203	<u>544</u>	<u>23</u>	<u>75</u>	<u>318</u>	<u>243</u>
증 감	-	<u>△7</u>	<u>⊕1</u>	<u>⊕6</u>	<u>⊕7</u>	<u>△7</u>

나. 직급별 정원 조정내역

《일 반 직》 ※ 정무직(1), 연구직(17), 지도직(3)은 변동없음

구 분	계	3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현 행	1,182	10	68	<u>238</u>	<u>331</u>	<u>309</u>	<u>226</u>
개 정	1,182	10	68	<u>247</u>	<u>326</u>	<u>310</u>	<u>221</u>
증 감	-	-	-	<u>⊕9</u>	<u>△5</u>	<u>⊕1</u>	<u>△5</u>

다. 직렬별 정원 조정 내역

구 분		계	본청	의회	직속	사업소	동
합 계		-	△7	⊕1	⊕6	⊕7	△7
5급	소 계	-	⊕1	-	-	△1	-
	행 정	-	⊕2	-	-	△2	-
	행정+시설	-	⊕1	-	-	△1	-
	행정+보건+환경	-	△1	-	-	⊕1	-
	행정+환경+시설	-	△1	-	-	⊕1	-
6급	소 계	⊕9	△6	⊕1	△2	⊕1	⊕15
	행 정	△1	△1	-	-	△5	⊕5
	방 호	⊕1	-	-	-	⊕1	-
	행정+전산	⊕1	-	⊕1	-	-	-
	행정+전산+통신	⊕1	⊕1				
	행정+복지	⊕6	△1	-	-	-	⊕7
	행정+환경	-	△5	-	-	⊕5	-
	행정+시설	-	⊕2	-	-	△2	-
	행정+농업	-	△1	-	-	⊕1	-
	행정+보건+환경	-	△1	-	-	⊕1	-
	행정+공업+학예연구소	-	⊕1	-	-	△1	-
	보건+간호	⊕1	-	-	△2	-	⊕3
	운 전	-	△1	-	-	⊕1	-
7급	소 계	△5	△10	-	△1	⊕12	△6
	행 정	△2	⊕4	-	-	△2	△4
	행정+전산	△1	△1	-	-	-	-
	사회복지	△2	-	-	-	-	△2
	공 업	-	△2	-	-	⊕2	-
	수 의	△1	△1	-	-	-	-
	보 건	△1	-	-	△1	-	-
	환 경	-	△2	-	-	⊕2	-
	행정+공업	-	⊕1	-	-	△1	-
	행정+환경	-	△4	-	-	⊕4	-
	공업+환경	-	△1	-	-	⊕1	-
	운 전	⊕2	△5	-	-	⊕7	-
	사무 운영	-	⊕1	-	-	△1	-

구 분		계	본청	의회	직속	사업소	동
8급	소 계	⊕1	⊕4	-	⊕5	-	△8
	행 정	-	⊕4	-	-	△4	-
	행정+방재안전	⊕1	⊕1	-	-	-	-
	사회복지	-	⊕3	-	-	-	△3
	공 업	-	⊕1	-	-	△1	-
	농 업	⊕1	⊕1	-	-	-	-
	간 호	-	-	-	⊕5	-	△5
	환 경	-	△1	-	-	⊕1	-
	시설+방재안전	⊕1	⊕1	-	-	-	-
	행정+시설	-	⊕2	-	-	△2	-
	공업+환경	-	△2	-	-	⊕2	-
	운 전	△2	△6	-	-	⊕4	-
9급	소 계	△5	⊕4	-	⊕4	△5	△8
	행 정	-	⊕2	-	-	△2	-
	방 호	△1	-	-	-	△1	-
	행정+방재안전	△1	△1	-	-	-	-
	사회복지	-	⊕5	-	⊕3	-	△8
	공 업	-	⊕2	-	-	△2	-
	농 업	⊕1	⊕1	-	-	-	-
	환 경	-	△2	-	-	⊕2	-
	시 설	-	⊕1	-	-	△1	-
	시설+방재안전	△1	△1	-	-	-	-
	운 전	-	△4	-	⊕1	⊕3	-
	사무운영	△3	⊕1	-	-	△4	-

3. 개정 규칙안 : 별첨

4. 신·구조문 대조표 : 별첨

5. 입법예고 : 2018. 12. 12. ~ 12. 15.(3일간)

-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적은 행정조직 내부 인력 조정 사항이며, 민선7기 조직개편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축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목포시 자치법규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정』 제10조

-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서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6. 규제심사(심의) 대상여부 검토 : 해당없음

7.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개선사항없음

○ 여성가족과-44220(2018.12.11.) : 2018A전남목포062

8. 예산사항

구 분	증감인원	소요비용 내역 (원)			비고
		인원	1인당 보수액	총 금액	
계				302,170,960	
6급	9	9	76,550,460	688,954,140	20호봉
7급	△5	△5	50,049,240	△250,246,200	5호봉
8급	1	1	41,718,620	41,718,620	3호봉
9급	△5	△5	35,651,120	△178,255,600	1호봉

※ 비용소요 추계서 참고

9.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안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530-701,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자치행정과)]

10.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061-270-3439, FAX 270-87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소요 추계서 (1)

1. 관련 법규명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목포시 지방공무원 관리기관별 정원규정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

- 기 구 : 변동 없음
- 정원 및 비용 증감내역

구 분	증감인원		소요비용 내역 (원)			비고
	계	9급	인원	1인당 보수액	총 금액	
감원	5	5	5	35,651,120	△178,255,600	1호봉

3. 비용 소요 내역

(9급 1호봉 기준)

구 분	소요비용(원)	산 출 근 거	비고
총 계	35,651,120		
○ 인건비	25,526,160		
- 기본급	17,385,600	1,448,800원*12월	
- 수당	8,140,560		
•정액급식비	1,560,000	130,000원*12월	
•명절휴가비	1,738,560	1,448,800원*60%*2회	
•연가보상비	830,640	1,448,800원*86%*1/30*20일	
•시간외수당	4,011,360	8,357원*40시간*12월	
○ 직급보조비	1,500,000	125,000원*12월	
○ 이전경비	8,624,960		
- 성과상여금	2,262,040	2,056,400원*110%	
- 연금부담금 등	5,381,700	(인건비+직급보조비+성과상여금)*18.375%	
- 국민건강보험금	913,790	(인건비+직급보조비+성과상여금)*3.12%	
- 장기요양보험금	67,430	(건강보험금*7.38%)	

4. 작성자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장 박 남 규

비용소요 추계서 (2)

1. 관련 법규명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목포시 지방공무원 관리기관별 정원규정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

- 기 구 : 변동 없음
- 정원 및 비용 증감내역

구 분	증감인원		소요비용 내역 (원)			비고
	계	8급	인원	1인당 보수액	총 금액	
증원	1	1	1	41,718,620	41,718,620	3호봉

3. 비용 소요 내역

(8급 3호봉 기준)

구 분	소요비용(원)	산 출 근 거	비고
총 계	41,718,620		
○ 인건비	30,112,430		
- 기본급	21,009,600	1,750,800원*12월	
- 수당	9,102,830		
•정액급식비	1,560,000	130,000원*12월	
•명절휴가비	2,100,960	1,750,800원*60%*2회	
•연가보상비	1,003,790	1,750,800원*86%*1/30*20일	
•시간외수당	4,438,080	9,246원*40시간*12월	
○ 직급보조비	1,500,000	125,000원*12월	
○ 이전경비	10,106,190		
- 성과상여금	2,660,350	2,418,500원*110%	
- 연금부담금 등	6,297,620	(인건비+직급보조비+성과상여금)*18.375%	
- 국민건강보험금	1,069,310	(인건비+직급보조비+성과상여금)*3.12%	
- 장기요양보험금	78,910	(건강보험금*7.38%)	

4. 작성자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장 박 남 규

비용소요 추계서 (3)

1. 관련 법규명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목포시 지방공무원 관리기관별 정원규정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

- 기 구 : 변동 없음
- 정원 및 비용 증감내역

구 분	증감인원		소요비용 내역 (원)			비고
	계	7급	인원	1인당 보수액	총 금액	
감원	5	5	5	50,049,240	△250,246,200	5호봉

3. 비용 소요 내역

(7급 5호봉 기준)

구 분	소요비용(원)	산 출 근 거	비고
총 계	50,049,240		
○ 인건비	37,614,190		
- 기본급	25,651,200	2,137,600원*12월	
- 수당	11,962,990		
•정액급식비	1,560,000	130,000원*12월	
•명절휴가비	2,565,120	2,137,600원*60%*2회	
•연가보상비	1,225,550	2,137,600원*86%*1/30*20일	
•시간외수당	4,943,520	10,299원*40시간*12월	
•정근수당	1,068,800	2,137,600원*25%(6년미만근무)*2회	
•정근수당가산금	600,000	50,000원(5년이상근무)*12월	
○ 직급보조비	1,680,000	140,000원*12월	
○ 이전경비	12,435,050		
- 성과상여금	3,202,540	2,911,400원*110%	
- 연금부담금 등	7,808,770	(인건비+직급보조비+성과상여금)*18.375%	
- 국민건강보험금	1,325,890	(인건비+직급보조비+성과상여금)*3.12%	
- 장기요양보험금	97,850	(건강보험금*7.38%)	

4. 작성자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장 박 남 규

비용소요 추계서 (4)

1. 관련 법규명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목포시 지방공무원 관리기관별 정원규정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

- 기 구 : 변동없음
- 정원 및 비용 증감내역

구 분	증감인원		소요비용 내역 (원)			비고
	계	6급	인원	1인당 보수액	총 금액	
증원	9	9	9	76,550,460	688,954,140	20호봉

3. 비용 소요 내역

(6급 20호봉 기준)

구 분	소요비용(원)	산 출 근 거	비고
총 계	76,550,460		
○ 인건비	57,261,070		
- 기본급	43,761,600	3,646,800원*12월	
- 수당	13,499,470		
•정액급식비	1,560,000	130,000원*12월	
•명절휴가비	4,376,160	3,646,800원*60%*2회	
•연가보상비	2,090,830	3,646,800원*86%*1/30*20일	
•시간외수당	5,472,480	11,401원*40시간*12월	
○ 직급보조비	1,860,000	155,000원*12월	
○ 이전경비	17,429,390		
- 성과상여금	3,766,840	3,424,400원*110%	
- 연금부담금 등	11,555,650	(인건비+직급보조비+성과상여금)*18.375%	
- 국민건강보험금	1,962,100	(인건비+직급보조비+성과상여금)*3.12%	
- 장기요양보험금	144,800	(건강보험금*7.38%)	

4. 작성자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장 박 남 규

목포시 규칙 제 호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 정 >

[별표 1]

목포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의회	직속	사업소	동
총 계		<u>1,203</u>	<u>544</u>	<u>23</u>	<u>75</u>	<u>318</u>	<u>243</u>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u>1,182</u>	<u>539</u>	<u>23</u>	<u>75</u>	<u>302</u>	<u>243</u>
	3급	1	1				
	4급	9	4	1	1	3	
	5급	68	<u>25</u>	3	3	<u>14</u>	23
	6급	<u>247</u>	<u>121</u>	<u>4</u>	<u>13</u>	<u>62</u>	<u>47</u>
	7급	<u>326</u>	<u>169</u>	7	<u>14</u>	<u>85</u>	<u>51</u>
	8급	<u>310</u>	<u>120</u>	8	<u>33</u>	76	<u>73</u>
	9급	<u>221</u>	<u>99</u>	0	<u>11</u>	<u>62</u>	<u>49</u>
연구직	계	17	2			15	
	연구관						
	연구사	17	2			15	
지도직	계	3	2			1	
	지도관						
	지도사	3	2			1	

< 개 정 >

[별표 2]

목포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제2조 관련)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총계			1,203	544	23	75	318	243(12)
정무직		합 계	1	1				
		시 장	1	1				
일반직		일반직 합계	1,182	539	23	75	302	243(12)
	3급	소계	1	1				
		행정	1	1				
	4급	소계	9	4	1	1	3	
		행정	3	2			1	
		기술	1			1		
		행정+기술	5	2	1		2	
	5급	소계	68	25	3	3	14	23
		행 정	19	7	1		0	11
		시 설	1	1				
		행정+사회복지	3	1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환경	1	0			1	
		행정+시설	16	8	1		4	3
		행정+학예연구관	1				1	
		행정+사회복지+공업+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2	2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공업+시설	4	2			2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시설+해양수산	2	2				
		행정+환경+시설	2	0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보건+간호	1			1		
		공업+보건+환경	1				1	
		공업+환경+시설	1				1	
		행정+공업+농업+농촌지도관	1	1				
		행정+녹지+시설+농촌지도관	1				1	
		행정+농업+해양수산+환경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행정+보건+약무+간호	1			1		
		보건+의무+약무+간호	1			1		

직종별	직급	직렬별	기관별	합계	본청	인화 사무국	지순	사업소	등
일반직	6급	소계		247	121	4	13	62	47
		행 정		59	30	3		4	22
		세 무		6	6				
		사회복지		8	3				5
		방 호		1				1	
		공 업		2				2	
		해양수산		2	2				
		보 건		1			1		
		시 설		3	1			2	
		행정+세무		5	3			1	1
		행정+사회복지		22	10				12
		행정+전산		7	6	1			
		행정+농업		1	0			1	
		행정+환경		5	0			5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보건		3			3		
		행정+공업		8	5			3	
		행정+시설		46	25			21	
		행정+학예연구소		2				2	
		행정+농촌지도사		1					1
		공업+환경		1				1	
		공업+시설		3				3	
		공업+환경연구소		1				1	
		보건+식품위생		1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5			2		3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전산+사회복지		2					2
		행정+사회복지+수의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전산+시설		5	5				
		행정+전산+방송통신		2	2				
		행정+공업+시설		8	7			1	
		행정+공업+학예연구소		1	1			0	
		행정+녹지+시설		3				3	
		행정+해양수산+시설		3	3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보건+환경		1	0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시설+학예연구소		1	1				
		행정+시설+녹지+농촌지도사		1				1	
		공업+보건+환경연구소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의료기술+약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약무		1			1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1				1	
		행정+농업+환경+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수의+농촌지도사		2	2				
		공업+수의+환경+환경연구소		1				1	
		운 전		3	2			1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건축운영	1	1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1				1	
		전기운영+기계운영	1				1	
일반직	7급	소계	326	169	7	14	85	51
		행 정	111	55	6		20	30
		세 무	23	22			1	
		사회복지	32	14				18
		전 산	6	5			1	
		공 업	32	12			20	
		농 업	1	1				
		녹 지	3				3	
		수 의	0	0				
		해양수산	5	5				
		보 건	1			1		
		의료기술	1			1		
		간 호	1			1		
		환 경	4	0			4	
		시 설	25	17			8	
		방송통신	3	3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	7	4				3
		행정+전산	3	3				
		행정+공업	3	3			0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환경	5	1			4	
		행정+시설	4	3			1	
		행정+학예연구사	1				1	
		전산+방송통신	2	2				
		공업+시설	1				1	
		공업+환경	1	0			1	
		보건+식품위생	4			4		
		보건+약무	0			0		
		보건+약무+간호	1			1		
		보건+간호	6	1		5		
		의료기술+간호	1			1		
		행정+공업+시설	1	1				
		사회복지+보건+간호	1	1				
		운 전	12	3	1		8	
		위 생	1				1	
		토목운영	1				1	
		건축운영	2	1			1	
		전기운영	3				3	
		기계운영	5	1			4	
		열관리운영	1				1	
		사무운영	6	6			0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반직	8급	소계	310	120	8	33	76	73
		행 정	93	45	1		16	31
		세 무	10	9			1	
		사회복지	40	11				29
		속 기	3		3			
		전 산	2	1	1			
		공 업	14	2		1	11	
		농 업	2	2				
		녹 지	4				4	
		해양수산	4	4				
		보 건	5			5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5			5		
		간 호	13	1		12		0
		환 경	1	0			1	
		시 설	28	17			11	
		방송통신	3	1			2	
		행정+사회복지+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13					13
		행정+세무	2	2				
		행정+전산	1				1	
		행정+농업	2	2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2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6	5			1	
		행정+방재안전	1	1				
		전산+방송통신	1	1				
		공업+환경	4	0			4	
		공업+시설	1				1	
		보건+식품위생	2			2		
		보건+간호	3			3		
		의료기술+간호	2			2		
		시설+방재안전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전산+방송통신+시설	1	1				
		사회복지+간호	1			1		
		방 호	1				1	
		운 전	12	6	1		5	
		위 생	1				1	
		건축운영	1	1			0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6	1			5	
		기계운영	7				7	
		열관리운영	1				1	
		화공운영	1				1	
		사무운영	4	1	1		2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반직	9급	소계	<u>221</u>	<u>99</u>	0	<u>11</u>	<u>62</u>	<u>49(12)</u>
		행 정	58	<u>30</u>			<u>7</u>	21(12)
		세 무	4	4				
		전 산	1	1				
		사회복지	44	<u>21</u>		<u>3</u>		<u>20</u>
		공 업	16	<u>3</u>			<u>13</u>	
		농 업	<u>1</u>	<u>1</u>				
		녹 지	3				3	
		해양수산	1	1				
		보 건	3			3		
		식품위생	1			1		
		환 경	2	<u>0</u>			<u>2</u>	
		시 설	14	<u>10</u>			<u>4</u>	
		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	5					5
		행정+전산	2	2				
		행정+농업	0	0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	4	2			2	
		행정+방재안전	<u>0</u>	<u>0</u>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시설+방재안전	<u>0</u>	<u>0</u>				
		방 호	<u>3</u>				<u>3</u>	
		운 전	25	<u>9</u>		<u>3</u>	<u>13</u>	
		위 생	1	1			0	
		시설관리	2	1			1	
		건축운영	1				1	
		전화상담운영	2	2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10	1			9	
		열관리운영	0				0	
		화공운영	1				1	
		사무운영	<u>11</u>	<u>7</u>			<u>1</u>	3
연구직		연구사합계	17	2			15	
		학예연구사	11	1			10	
		환경연구사	5				5	
		기록연구사	1	1				
지도직		지도사합계	3	2			1	
		농촌지도사	3	2			1	

신·구조문 대비표(별표1)

현행								개정안							
[별표1] 목포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2조 관련)								[별표1] 목포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의회	직속	사업소	동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의회	직속	사업소	동
총 계		1,203	551	22	69	311	250	총 계		1,203	544	23	75	318	243
정무직	계	1	1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1,182	546	22	69	295	250	일반직	계	1,182	539	23	75	302	243
	3급	1	1						3급	1	1				
	4급	9	4	1	1	3			4급	9	4	1	1	3	
	5급	68	24	3	3	15	23		5급	68	25	3	3	14	23
	6급	238	127	3	15	61	32		6급	247	121	4	13	62	47
	7급	331	179	7	15	73	57		7급	326	169	7	14	85	51
	8급	309	116	8	28	76	81		8급	310	120	8	33	76	73
	9급	226	95	0	7	67	57		9급	221	99	0	11	62	49
연구직	계	17	2			15		연구직	계	17	2			15	
	연구관								연구관						
	연구사	17	2			15			연구사	17	2			15	
지도직	계	3	2			1		지도직	계	3	2			1	
	지도관								지도관						
	지도사	3	2			1			지도사	3	2			1	

신·구조문 대비표(별표2)

현행							개정안						
[별표2] 목포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별표2] 목포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총계	1,203	551	22	69	311	250 (12)	총계	1,203	544	23	75	318	243 (12)
정무직 계	1	1					정무직 계	1	1				
시 장	1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182	546	22	69	295	250 (12)	일반직 계	1,182	539	23	75	302	243 (12)
3급 소계	1	1					3급 소계	1	1				
행 정	1	1					행 정	1	1				
4급 소계	9	4	1	1	3		4급 소계	9	4	1	1	3	
행 정	3	2			1		행 정	3	2			1	
기 술	1			1			기 술	1			1		
행정+기술	5	2	1		2		행정+기술	5	2	1		2	
5급 소계	68	24	3	3	15	23	5급 소계	68	25	3	3	14	23
행 정	19	5	1		2	11	행 정	19	7	1		0	11
시 설	1	1					시 설	1	1				
행정+사회복지	3	1				2	행정+사회복지	3	1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공업	1				1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보건+환경	1	0			1	
행정+시설	16	7	1		5	3	행정+시설	16	8	1		4	3
행정+학예연구관	1				1		행정+학예연구관	1				1	
행정+사회복지+공업+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공업+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2	2					행정+사회복지+보건	2	2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공업+시설	4	2			2		행정+공업+시설	4	2			2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농업+녹지	1					1

현							개						
행							정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행정+시설+해양수산	2	2					행정+시설+해양수산	2	2				
행정+환경+시설	2	<u>1</u>				1	행정+환경+시설	2	<u>0</u>			<u>1</u>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보건+간호	1			1		
공업+보건+환경	1				1		공업+보건+환경	1				1	
공업+환경+시설	1				1		공업+환경+시설	1				1	
행정+공업+농업+농촌지도관	1	1					행정+공업+농업+농촌지도관	1	1				
행정+농지+시설+농촌지도관	1				1		행정+농지+시설+농촌지도관	1				1	
행정+농업+해양수산+환경	1		1				행정+농업+해양수산+환경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행정+보건+약무+간호	1			1			행정+보건+약무+간호	1			1		
보건+의무+약무+간호	1			1			보건+의무+약무+간호	1			1		
6급 소계	<u>238</u>	<u>127</u>	<u>3</u>	<u>15</u>	61	<u>32</u>	6급 소계	<u>247</u>	<u>121</u>	<u>4</u>	<u>13</u>	<u>62</u>	<u>47</u>
행 정	<u>60</u>	<u>31</u>	3		<u>9</u>	<u>17</u>	행 정	<u>59</u>	<u>30</u>	3		<u>4</u>	<u>22</u>
세 무	6	6					세 무	6	6				
사회복지	8	3				5	사회복지	8	3				5
공 업	2				2		방 호	<u>1</u>				<u>1</u>	
해양수산	2	2					공 업	2				2	
보 건	1			1			해양수산	2	2				
시 설	3	1			2		보 건	1			1		
행정+세무	5	3			1	1	시 설	3	1			2	
행정+사회복지	<u>16</u>	<u>11</u>				<u>5</u>	행정+세무	5	3			1	1
행정+전산	<u>6</u>	<u>6</u>					행정+사회복지	<u>22</u>	<u>10</u>				<u>12</u>
행정+농업	1	<u>1</u>					행정+전산	<u>7</u>	6	<u>1</u>			
행정+환경	5	<u>5</u>					행정+농업	1	<u>0</u>			<u>1</u>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환경	5	<u>0</u>			<u>5</u>	
행정+보건	3			3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공업	8	5			3		행정+보건	3			3		
행정+시설	46	<u>23</u>			<u>23</u>		행정+공업	8	5			3	
행정+학예연구사	2				2		행정+시설	46	<u>25</u>			<u>21</u>	
행정+농촌지도사	1					1	행정+학예연구사	2				2	
							행정+농촌지도사	1					1

현행							개정안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공업+환경	1				1		공업+환경	1				1	
공업+시설	3				3		공업+시설	3				3	
공업+환경연구 사	1				1		공업+환경연구 사	1				1	
보건+식품위생	1			1			보건+식품위생	1			1		
보건+약무	1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4			4			보건+간호	5			2		3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전산+사회 복지	2					2	행정+전산+사회 복지	2					2
행정+사회복지+ 수의	1					1	행정+사회복지+ 수의	1					1
행정+사회복지+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시설	1	1				
행정+전산+시설	5	5					행정+전산+시설	5	5				
행정+전산+방송 통신	1	1					행정+전산+방송 통신	2	2				
행정+공업+시설	8	7			1		행정+공업+시설	8	7			1	
행정+공업+학예 연구사	1				1		행정+공업+학예 연구사	1	1			0	
행정+녹지+시설	3				3		행정+녹지+시설	3				3	
행정+해양수산+ 시설	3	3					행정+해양수산+ 시설	3	3				
행정+보건+식품 위생	1			1			행정+보건+식품 위생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보건+환경	1	0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시설+학예 연구사	1	1					행정+시설+학예 연구사	1	1				
행정+시설+녹지 +농촌지도사	1				1		행정+시설+녹지 +농촌지도사	1				1	
공업+보건+환경 연구사	1				1		공업+보건+환경 연구사	1				1	
보건+의료기술+ 간호	1			1			보건+의료기술+ 간호	1			1		
의료기술+약무+ 간호	1			1			의료기술+약무+ 간호	1			1		
보건+의료기술+ 약무	1			1			보건+의료기술+ 약무	1			1		
행정+공업+시설 +방송통신	1				1		행정+공업+시설 +방송통신	1				1	
행정+농업+환경 +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환경 +농촌지도사	1	1				

현행							개정안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행정+농업+수의 +농촌지도사	2	2					행정+농업+수의 +농촌지도사	2	2				
공업+수의+환경 +환경연구사	1				1		공업+수의+환경 +환경연구사	1				1	
윤 전	3	3					윤 전	3	2			1	
건축운영	1	1					건축운영	1	1				
통신운영	1	1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2				2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1				1		기계운영	1				1	
전기운영+기계 운영	1				1		전기운영+기계 운영	1				1	
7급 소계	331	179	7	15	73	57	7급 소계	326	169	7	14	85	51
행 정	113	51	6		22	34	행 정	111	55	6		20	30
세 무	23	22			1		세 무	23	22			1	
사회복지	34	14				20	사회복지	32	14				18
전 산	6	5			1		전 산	6	5			1	
공 업	32	14			18		공 업	32	12			20	
농 업	1	1					농 업	1	1				
녹 지	3				3		녹 지	3				3	
수 의	1	1					수 의	0	0				
해양수산	5	5					해양수산	5	5				
보 건	2			2			보 건	1			1		
의료기술	1			1			의료기술	1			1		
간 호	1			1			간 호	1			1		
환 경	4	2			2		환 경	4	0			4	
시 설	25	17			8		시 설	25	17			8	
방송통신	3	3					방송통신	3	3				
행정+세무	3	3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	7	4				3	행정+사회복지	7	4				3
행정+전산	4	4					행정+전산	3	3				
행정+공업	3	2			1		행정+공업	3	3			0	

현행							개정안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행정+농업	1	1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1				1		행정+녹지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환경	5	5					행정+환경	5	1			4	
행정+시설	4	3			1		행정+시설	4	3			1	
행정+학예연구사	1				1		행정+학예연구사	1				1	
전산+방송통신	2	2					전산+방송통신	2	2				
공업+시설	1				1		공업+시설	1				1	
공업+환경	1	1					공업+환경	1	0			1	
보건+식품위생	4			4			보건+식품위생	4			4		
보건+약무+간호	1			1			보건+약무+간호	1			1		
보건+간호	6	1		5			보건+간호	6	1		5		
의료기술+간호	1			1			의료기술+간호	1			1		
행정+공업 +시설	1	1					행정+공업 +시설	1	1				
사회복지+보건 +간호	1	1					사회복지+보건 +간호	1	1				
윤 전	10	8	1		1		윤 전	12	3	1		8	
위 생	1				1		위 생	1				1	
토목운영	1				1		토목운영	1				1	
건축운영	2	1			1		건축운영	2	1			1	
전기운영	3				3		전기운영	3				3	
기계운영	5	1			4		기계운영	5	1			4	
열관리운영	1				1		열관리운영	1				1	
사무운영	6	5			1		사무운영	6	6			0	
8급 소계	309	116	8	28	76	81	8급 소계	310	120	8	33	76	73
행 정	93	41	1		20	31	행 정	93	45	1		16	31
세 무	10	9			1		세 무	10	9			1	

현							개						
행							정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사회복지	40	8				32	사회복지	40	11				29
속 기	3		3				속 기	3		3			
전 산	2	1	1				전 산	2	1	1			
공 업	14	1		1	12		공 업	14	2		1	11	
농 업	1	1					농 업	2	2				
녹 지	4				4		녹 지	4				4	
해양수산	4	4					해양수산	4	4				
보 건	5			5			보 건	5			5		
식품위생	1			1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5			5			의료기술	5			5		
간 호	13	1		7		5	간 호	13	1		12		0
환 경	1	1					환 경	1	0			1	
시 설	28	17			11		시 설	28	17			11	
방송통신	3	1			2		방송통신	3	1			2	
행정+사회복지 +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13					13	행정+사회복지	13					13
행정+세무	2	2					행정+세무	2	2				
행정+전산	1				1		행정+전산	1				1	
행정+농업	2	2					행정+농업	2	2				
행정+공업	1	1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2	1		1			행정+보건	2	1		1		
행정+환경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6	3			3		행정+시설	6	5			1	
행정+방재안전	0						행정+방재안전	1	1				
전산+방송통신	1	1					전산+방송통신	1	1				
공업+환경	4	2			2		공업+환경	4	0			4	
공업+시설	1				1		공업+시설	1				1	
보건+식품위생	2			2			보건+식품위생	2			2		
보건+간호	3			3			보건+간호	3			3		

현행							개정안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의료기술+간호	2			2			의료기술+간호	2			2		
시설+방재안전	0						시설+방재안전	1	1				
행정+해양수산 +시설	1	1					행정+해양수산 +시설	1	1				
전산+방송통신 +시설	1	1					전산+방송통신 +시설	1	1				
사회복지+간호	1			1			사회복지+간호	1			1		
방 호	1				1		방 호	1				1	
운 전	14	12	1		1		운 전	12	6	1		5	
위 생	1				1		위 생	1				1	
건축운영	1	1			0		건축운영	1	1			0	
통신운영	1		1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6	1			5		전기운영	6	1			5	
기계운영	7				7		기계운영	7				7	
열관리운영	1				1		열관리운영	1				1	
화공운영	1				1		화공운영	1				1	
사무운영	4	1	1		2		사무운영	4	1	1		2	
9급 소계	226	95	0	7	67	57(12)	9급 소계	221	99	0	11	62	49(12)
행 정	58	28			9	21(12)	행 정	58	30			7	21(12)
세 무	4	4					세 무	4	4				
전 산	1	1					전 산	1	1				
사회복지	44	16				28	사회복지	44	21		3		20
공 업	16	1			15		공 업	16	3			13	
농 업	0						농 업	1	1				
녹 지	3				3		녹 지	3				3	
해양수산	1	1					해양수산	1	1				
보 건	3			3			보 건	3			3		
식품위생	1			1			식품위생	1			1		

※ 괄호 ()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수입

현행							개정안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환경	2	2					환경	2	0			2	
시설	14	9			5		시설	14	10			4	
방송통신	1	1					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	5					5	행정+사회복지	5					5
행정+전산	2	2					행정+전산	2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	4	2			2		행정+시설	4	2			2	
행정+방재안전	1	1					행정+방재안전	0	0				
보건+의료기술 +간호	1			1			보건+의료기술 +간호	1			1		
시설+방재안전	1	1					시설+방재안전	0	0				
방호	4				4		방호	3				3	
운전	25	13		2	10		운전	25	9		3	13	
위생	1	1			0		위생	1	1			0	
시설관리	2	1			1		시설관리	2	1			1	
건축운영	1				1		건축운영	1				1	
전화상담운영	2	2					전화상담운영	2	2				
전기운영	2				2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10	1			9		기계운영	10	1			9	
열관리운영	0				0		열관리운영	0				0	
화공운영	1				1		화공운영	1				1	
사무운영	14	6			5	3	사무운영	11	7			1	3
연구직계	17	2			15		연구직계	17	2			15	
학예연구사	11	1			10		학예연구사	11	1			10	
환경연구사	5				5		환경연구사	5				5	
기록연구사	1	1					기록연구사	1	1				
지도직계	3	2			1		지도직계	3	2			1	
농촌지도사	3	2			1		농촌지도사	3	2			1	

【 관계법령 발췌본 】

관 계 법 령	내 용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관 계 법 령	내 용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2013.12.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공고 제2018-1560호

「목포시 교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 입법 예고문

「목포시 교육발전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 5.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에 관한 사항(추가)

3. 입법예고

- 2018. 12. 12(수) ~ 2019. 1. 1(화)[20일간]

4. 개정조례안 : 붙임 1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6.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월 1일까지 목포시장(교육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58724, 전남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목포시청 교육체육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646), 직접방문 등

7.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교육체육과(☎ 061-270-3288, FAX 270-36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목포시 교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붙임 1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교육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교육발전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2**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 보조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 4. (생 략) <u><신 설></u> 5. (생 략)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u> <u>에 관한 사항</u> 6. (현행 제5호와 같음)

의 건 제 출 서

조 례 명	목포시 교육발전지원 조례			
의 건 제 출 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 례 안 조 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목포시 교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목포시장 귀하				